

2012 춘계(통산 12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 교육적 접근

- 일시 : 2012. 5. 26(토) 13:00 - 18:3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206호
- 주최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후원 : 법무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2 춘계(통산 12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 교육적 접근

- 일시 : 2012. 5. 26(토) 13:00 - 18:3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206호
- 주최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후원 : 법무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 행사 프로그램 ●●

### 1부: 개회식 및 기조 발제

사회 : 김상돈(서울 공릉초, 본회 사무국장)

- 개회선언 .....사회자
- 국민의례 .....다같이
- 개회 인사 .....허종렬(서울교대, 본회 회장)
- 축 사 .....김희관(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기조 발제: **학교폭력, 인권 그리고 법**

발표: 김준호(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 최윤진(중앙대, 본회 부회장)

#### [주제 1] 특수아동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발표: 이현수(영동대)

토론: 홍한영(수원 서광학교), 이광세(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희연(서울사이버대)

#### [주제 2]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발표: 정승재(장안대)

토론: 손석정(남서울대), 이발래(국가인권위원회), 김영식(한국교원대)

사회 : 박용조(진주교대, 본회 부회장)

#### [주제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학교규칙

발표: 이대성(고양 백신고)

토론: 고래익(서울 중원중), 정상우(인하대), 오승걸(교육과학기술부)

#### [주제 4]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과 교원양성대학의 과제

발표: 허종렬(서울교대)

토론: 박상준(전주교대), 김혜숙(연세대), 김영문(법무부)

### 3부: 폐회식

사회 : 김상돈(서울 공릉초, 본회 사무국장)

- 공지사항 .....김상돈(서울 공릉초, 본회 사무국장)
- 폐회선언 .....박인현(대구교대, 본회 수석부회장)
- \* 만찬 행사(장소: 두부촌) .....다같이



● ● 목 차 ● ●

**< 인사 말씀 >**

인사말씀..... 허종렬

**< 기조 발제 >**

학교폭력, 인권 그리고 법  
.....김준호(1)

**< 주제 발표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 교육적 접근**

[주제발표 1] 특수아동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이현수(25)

[주제발표 2]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정승재(43)

[주제발표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학교규칙  
.....이대성(63)

[주제발표 4]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과 교원양성대학의 과제  
.....허종렬(103)



## 인사 말씀

평소 법과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 발표회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교육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학회로서는 통산 제12차 학술발표회가 됩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 계각층의 지대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의 유관 기관에서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내놓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은 정부가 나서서 것 못지않게 현장 학교의 구성원들이나 교사 양성 대학이 나서서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학교 당사자와 교사 양성 대학의 역할에 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논의의 초점을 일반학교 학생들에게만 집중하다보니 특수아동이나 스포츠 선수 등의 소수자 학교폭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소수자의 학교폭력 실태와 해결방안을 법·인권 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가 학술적 논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학교 현장의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본 학술대회의 기초 발제를 맡아 주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준호 교수님과 발제와 토론을 흔쾌히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에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신 법무부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개최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신 서울교육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학술대회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다 해준 학회 사무국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26일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허종렬 드림

•• 기초 발제 ••

**학교폭력, 인권 그리고 법**



[기조 발제]

## 학교폭력, 인권 그리고 법

김 준 호(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학교폭력의 원인
- III. 우리 사회의 폭력성의 원인
- IV. 법과 인권
- 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학교폭력에는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다. 괴롭힘(혹은 왕따)과 금품갈취,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은 많은 경우 교차된다. 금품갈취가 없이 괴롭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괴롭힘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한다. 괴롭힘은 심리적인 괴롭힘 흔히 왕따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한 괴롭힘도 있다. 금품갈취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이 모두 발생한다. 심리적인 괴롭힘과 물리적인 폭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폭력을 주어진 권한 혹은 권력을 활용하여 원하는 대상을 얻는데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강제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심리적인 괴롭힘은 비가시적인 폭력이며 물리적인 폭력은 가시적인 폭력이라는 점에서 다르나 결국 폭력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함한다. 예컨대 음주와 흡연, 그리고 음란물 등 청소년들에게 아직 허용되지 않는 다양한 바람직한 행위가 있다. 이러한 비행은 폭력과 연관되어 있으나 학교폭력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괴롭힘과 금품갈취는 가시적 비가시적 폭력을 수반하기에 학교폭력이라 부르며 폭력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비행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비행과는

#### 4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 교육적 접근

구별되는 심각한 비행이며, 이러한 학교폭력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만연되었다는 사실은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II. 학교폭력의 원인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학벌 중심 사회의 문제점이며, 둘째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퇴폐향락문화이며, 셋째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라 생각한다.

### 1. 학벌 중심 사회

SKY 대학이라는 말이 있다. 서울대학(Seoul), 고려대학(Korea), 연세대학(Yonsei)의 알파벳 첫 글자를 조합한 말로서 우리나라 소위 명문대 3개 대학을 말한다. 하늘(Sky)처럼 높아 보통 사람은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라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신조어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명문대는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대인 Ivy,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등 좋게 말하면 그 나라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대학이 있다. 이런 대학은 입학하기 어려우며 졸업하기도 어려우나, 졸업 후에는 사회적인 성공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에서 힘을 쓰는 사람의 대다수가 Sky 대학 출신이 많다. 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법조계, 고위 관료, 재계, 의료계, 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이 대학 출신의 비율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자식이 이런 명문대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명문대와 외국 특히 서구의 명문대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외국의 명문대는 비명문대에 비해 학교의 규모나 교육 시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차별화될 정도로 좋으며,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 역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전반적으로 볼 때 유사한 점이 있으나, 학생들의 학창 시절을 보면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즉 명문대라 할지라도 비인기학과 학생들은 전공보다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전공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전공 선택 역시 그렇다. 외국도 의대, 법대, 경영대 등 인기학과에 입학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비인기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그 전공이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것 같다.

한편 우리나라는 수학능력시험 점수, 내신 성적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점수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면 고등학교 문과 계열 학생의 대다수는 명문대 법대나 경영대에 가고 싶으나 점수가 모자라 다른 전공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점수가 좋지 않아 법대<sup>1)</sup>나 경영대가 아닌 비인기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후에 전공과목에 관심을 보이기보다 사시나 행시 등 고위관료를 충원하는 시험 준비에 몰입하거나, 언론이나 방송사, 대기업 등의 취업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요즘은 명문대 비인기학과와 비명문대 인기학과 사이의 선호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명문대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 명문대 인기학과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문대 비인기학과와 비명문대 인기학과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아직도 많은 사람이 명문대 비인기학과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연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연줄이 중요하다. 혈연, 학연, 지연이 아직도 매우 중요한 힘을 발휘한다. 삼성 같은 초국적 기업,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도 혈연에 의한 경영권 승계가 당연시 된다. 이렇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주식이 자식들에게 상속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될 수 있으나 경영권이 상속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나, 역대 대통령치고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스럽지 못했다. 5공 시절의 전\*환, 소위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문민정부 시절에도 30대 젊은이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소통령이라 불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고, 이러한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외친 DJ 역시 자식들의 비리에서 자유스럽지 못했으며, 사실이건 정치적인 흑색선전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최근까지도 일부 신문 기사를 보면 자유스럽지 못한 것 같다.

혈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학연과 지연이다. 독재 정권 시절의 TK는 지역과 학연이 혼합된 형태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집단이며, 최근의 고소영이라는 말 역시 대통령이 어떤 대학 출신인가에 따라 특정 학교 선후배가 실세가 되기도 한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심지어 특정 고등학교가 각광을 받기도 했다. 재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면 출세하기 어렵고, 특정 학교 출신이라야 출세를 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아직도 지연의 영향력이 적지 않으나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면, 학연은 그

---

1) 법학전문 대학원이 도입된 요즘에도 법학전문 대학원에 입학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 6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 교육적 접근

렇지 않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같다. 국적은 바꿀 수 있으나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적이라는 뜻이 내포되었는데, 학적은 곧 학연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가 그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보다 더 중요하다. 갈수록 대학교 성적이 중요해지는 건 사실이나 아직도 GPA보다는 졸업장이 더 중요하다. 조금 과장을 하면 서울 법대를 꼴지로 졸업해도 평생 서울 법대 출신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방 비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해도 비 명문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 다닌다.

이러한 학연이 왜 중요한가? 선후배 사이의 돈독한 우정으로 미화되기도 하나 우정 이상의 사회적인 힘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학연으로 연결된 선후배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동창 관계를 넘어 서로 도움을 주는 사이라는 것이다. 좋게 말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서로 특혜를 주고받는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해서 기득권을 유지 존속하며 가능하면 확대 재생산을 한다는 말이 된다.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은 주위의 부러움을 받는다.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입지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비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대학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대접을 받기 어렵다. 역시 사실이건 과장되었건, 일부 재벌 회사는 비 명문대 출신이 낸 입사원서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일종의 신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며 그러한 신분은 죽는 날까지 학연이라는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학연이 중요한 사회, 학업이 아니라 학벌, 더 나아가 학연이 중요한 사회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청소년 초기부터 스스로 낙오자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해도 이른바 출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비명문대 졸업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허쉬(T. Hirsch)의 사회통제이론에서 시사점을 살펴보자.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은 흔히 사회유대(Social Bond)이론으로 불리는데,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된 분야에서 소외를 당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분야의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 그렇기에 출세가 보장된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쉽게 부정에 빠져들지 않는다.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들다가 받

각이 되면 이제까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좀처럼 규범을 어기는 행위, 즉 불법행위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반면, 미래가 암울한 사람은 정상적인 노력보다는 편법을 찾거나 심지어는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말이다.

학생들에게 미래란 무엇인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벌이 곧 신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에서 명문대에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들, 심지어는 수도권 4년제 대학에도 입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미래에 기대를 걸기가 어려워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업인 학업에 열중하기 힘들어진다. 공부가 곧 효도인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 하지 않는 학생은 가정에서 소외되기 쉽고 학교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공부에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공부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여러 대안이 있다. 예컨대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직업훈련 기회를 마련해주는 직업 전문학교에 진학하거나, 숙련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체육이나 예능에 특기가 있는 학생은 그 길로 매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공부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더구나 학벌, 숙된 말로 가방끈의 길이가 길수록 대접을 받는 사회에서 학벌이 아닌 대안적인 분야에서 열심히 매진하기 쉽지 않다.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 중 사회적으로 인정된 대안을 찾는 학생들도 적지 않으나, 공부에서 소외된 대부분의 학생들이 찾는 길은 어른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은 유흥향락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2. 퇴폐향락 산업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주먹질, 싸움은 있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여 심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친구에게 돈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폭력의 도구성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금품갈취 즉 친구에게 금품을 빼앗는 행위를 사회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무엇을 하기 위해 돈을 갈취하는가? 그것도 즉흥적, 일시적이 아니라 정기적, 거의 관행처럼 빼앗는가? 참고서를 사기 위해서도 아니고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한마디로 유흥비나 명품 의류, 휴대폰 등 고가 전자 기기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이 중에



## 8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 교육적 접근

서도 유흥비를 위해 돈을 갈취하는 것이 주종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복하는 말이나 청소년에게 금지된 다양한 행위에 포함되는 유흥은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며, 이러한 호기심은 적절한 통제 기제를 통하여 유예되어야 한다. 공부 때문에 부모와 사이가 멀어진 학생들에게 유흥에 대한 호기심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부추기는 요인이 우리나라에 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퇴폐향락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젊은 여성의 4명 중 1명이 유흥업소에 종사한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유흥업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성적인 서비스를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숫자로 나누어 보면 한 달 평균 적절치 못한 성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1.4회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퇴폐향락업소가 판을 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강남 3구, 이른바 우리나라의 고급 주택가는 외국과 다른 특징이 있다. 외국의 고급 주택가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고급 주택가와 고급 유흥업소가 공존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 한 때 강남보다 더 고급 주택가로 각광을 받던 여의도도 예외는 아니다. 이발소치고 퇴폐업소가 아닌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법 큰 빌딩에는 안마시술소가 있고, 서비스를 해주는 다양한 여자들이 있는 술집이 고급 술집일수록 비율은 높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이란 무엇일까? 성공하여 힘 좀 쓴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지나친 말일지 모르나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첫째는 어느 정도 수준의 법을 어기고도 무사히 살 수 있는가와 둘째는 평상시에 어느 수준의 향락을 즐길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글을 보면 우리나라 술집에는 10여 등급이 있다고 한다. 가장 아래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는 것부터 고위 관료나 재벌급 인사들이나 출입할 수 있는 밀실급 업소도 있다. 유흥이란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지위, 성공의 척도처럼 보인다. 뇌물을 주고받는 장소로서 유흥업소의 기능은 대단하다. 유흥 그 자체가 뇌물이기도 하나 유흥을 즐기면서 뇌물이 오가며 각종 비리성 밀약이 이루어진다. 어른들이 자제를 해도 청소년들은 유흥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유흥이란 사람이 가능하면 해서 안 되는 행위가 아니라 속된 말로 “폼 나게 사는” 기준이 되어 이들을 유흥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에게 유흥비를 줄 리 없다. 유흥비를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친구들에게 빼앗는 것이며 이것이 금품갈취가 학

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 된 주된 원인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왜 유흥비를 마련하는데 폭력이라는 수단을 동원할까? 다른 방법, 물론 옳지는 않으나 폭력이 아닌 다른 대안적인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부모에게 참고서를 산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흥비를 마련할 수도 있고 (물론 이 방법은 예전부터 자주 이용된다),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소한 절도로 유흥비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은 폭력을 도구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금품갈취가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가 되었는가?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폭력 사회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력을 광의로 규정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힘(권력)을 오남용하여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한 방법, 합법적인 방법, 사회적으로 인정된 방법이 아니라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폭력이라 규정하자. 설사 금품을 갈취하지 않는 단순한 폭력이라도 “화가 나서” 혹은 “심심해서” 폭력을 휘둘러도 넓은 의미의 폭력에 포함된다. 화를 풀기 위한 목적, 무료함을 덜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사회적인 진공 속에서 성장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어른들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 아이들이 쉽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폭력을 쉽게 사용하며 그 결과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글의 주제인 학교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성폭력, 그것도 어린 여자 아이에게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사건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나 아직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의 희생자는 호소할 길이 없어 운명이라 여기면서 참아야 한다. 이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역시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눈부신 정보화 덕분에 우리사회의 정보화 수준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어두운 모습이 사이버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거가 불확실한 인신공격은 인격 말살로 이어지고 시달린 피해자는 자살이라는 최후 수단으로 저항하기도 한다.

권력 혹은 힘을 오남용하여 원하는 대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

## 10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 교육적 접근

든 수단을 폭력이라고 정의할 때, 폭력의 목적 혹은 대상은 다양하다. 맹목적인 굴종과 굴복일 수도 있고, 돈이나 물건 등 물질일 수도 있으며, 성적인 쾌락일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은 분석적으로 두 가지 하위 차원이 있다. 하나는 비가시적 폭력이며 다른 하나는 가시적인 폭력이다. 가시적인 폭력은 주로 물리적인 힘으로 표출되며 비가시적인 폭력은 심리적 강압의 형태를 취한다. 현실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은 가시적 폭력과 비가시적 폭력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학교폭력은 주로 가시적인 폭력 유형에 속하나 심리적인 강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집단 따돌림(흔히 왕따)에도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주로 심리적인 강압의 형태를 보인다. 금품갈취 역시 유사하다.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무언의 협박과 같이 심리적인 강압만으로도 금품을 갈취할 수 있다. 소위 빵셔틀과 같이 강제적인 심부름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학교폭력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군대 폭력에서도 가시적 그리고 비가시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얼차레 주먹질 등 물리적인 폭력이 주된 수단이나 심리적인 강압으로도 상급자는 하급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다. 적지 않은 성폭력이 자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하나 심리적인 강압이 충분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폭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거의 관행화되면 가시적인 폭력은 비가시적인 형태로 둔갑하며 비가시적인 폭력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사회 문화적으로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면 제도적인 폭력으로 미화된다. 가시적인 형태의 성폭력은 남자가 물리적인 힘이나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저항하는 여성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는 행위이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불러왔던 성상납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리적인 강압이 수반되기도 하나 관행화되어 성상납의 대상이 된 여성은 대부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상납을 받는 남성에게 죄책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나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는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화된 성폭력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스스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들이 성매매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성매매 이외에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하나의 생존수단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며,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낯선 남자와 돈을 매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폭력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물리적 가시적인 폭력은 관행화되면서 비가시적인 폭력으로, 그리고 급기야는 제도적인 폭력으로 둔갑한다는 말이다. 한편 제도화된 폭력은 비가시적인 폭력을 뒷받침하며 이러한 관행화된 비가시적인 폭력은 가시적인 폭력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을 만든다. 학교폭력의 예를 들어보자. 학교폭력에는 사실 다양한 유형이 있다.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 사회문제도 대두되었으나 교사 폭력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학생들을 훈육한다는 미명 아래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교사 폭력은 아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의 폭력은 훈육이라는 말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다. 정당한 처벌의 수준의 벗어난 교사 폭력이 훈육으로 둔갑될 때 교사 폭력은 제도적인 폭력이 된다. 관행으로 제도화된 폭력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친다는 허울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발전된다. 이러한 관행화된 폭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물리적 가시적인 학교폭력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제도화된 폭력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일 것이다. 가장인 남편이 부인의 버르장머리를 가르치기 위해 행사하는 폭력은 제도화된 폭력이다. 요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 하나 아직도 가정폭력은 부부 간의 문제라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부모가 정당한 훈육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아직도 관행화된 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기 쉬우며, 형이 동생을 때리는 것 역시 자주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관행화, 제도화된 폭력은 폭력을 익숙하게 만들어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높게 만들며 이러한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이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든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폭력의 근저에 가시적-물리적 폭력과 비가시적-관행화된 폭력이라는 차원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 더하여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을 생각해보자.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는 차원으로 크게 정치-경제적 제도와 관련된 폭력과 사회문화적인 제도와 관련된 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경제 제도와 관련된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독재 정권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그리고 장악한 권력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무자비한 탄압은 대부분 가시적 물리적 폭력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정권을 탈취한 후 그들의

불법적인 권력을 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로 형식적인 정당화를 마련하면 적어도 현행법으로는 그들의 폭력은 불법이 아니며 세월이 가면서 이러한 가시적인 폭력은 비가시적인 폭력으로 변모하며 관행화된 폭력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관행화된 폭력은 좁은 의미에서 정치권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를 장악한 이들은 다양한 정부 부처, 특히 형사사법기관을 통하여 그들의 불법적인 정권을 유지 존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폭력,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 가시적 폭력을 관행화된 폭력을 행사한다.

경제권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대부분 비가시적인 형태이다. 가격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를 비롯한 흔히 화이트 칼라 범죄 중 경제와 관련된 범죄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 가장 두려운 것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정경유착이다. 정치 권력을 경제 권력에 각종 불법적인 특혜를 주는 대가로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아챙기며 그 일부는 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수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엄청난 부정한 자금을 챙기고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티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폭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나 폭력을 힘을 악용하여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 이보다 더 큰 폭력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물리적인 폭력이 노골적으로 수반되지 않은 비가시적, 관행화된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이 더 무서운 폭력일 수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예를 들어보자. 금품갈취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직접적인 폭력(구타나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돈을 빌리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며, 일일차집 등을 만들고 물건을 고가로 강매하기도 하며, 급기야는 정기적인 상납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으로 발전하면서 가시적-물리적 폭력은 덜 표출되며, 관행화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일상생활의 일부로 익숙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화된 폭력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 금품갈취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정치-경제와 연관된 폭력은 우리 사회의 폭력 현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화된 폭력, 제도화된 폭력, 구조적인 폭력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폭력과 연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좋게 말하면 우리사회의 지도층며, 나쁘게 말해도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라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사회의 기본틀을 만들기 때문이다. 마치 집안에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모습은 사회 전체의 모습 즉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 Ⅲ. 우리 사회의 폭력성의 원인

폭력을 한마디로 “힘의 오남용”이라고 정의하였다. 폭력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어느 사회건 이러한 폭력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한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폭력은 일상의 규범으로 통제한다. 형이 동생을 부모가 보기에 심하게 나무라면 부모가 형을 야단을 치기도 한다. 아주 심한 폭력은 대부분 법으로 금지한다.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각종 대인 폭력범죄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복잡한 사회에서 어떠한 행위가 폭력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어 법학자들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비롯한 각종 기준을 연구하며 국회는 이러한 이론적인 틀과 현실을 고려하여 각종 폭력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의 형사사법 기관은 이러한 법에 의하여 폭력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과연 모든 법이 정의로운가? 이것은 본 글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논의를 하지 않겠다.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나 일단 법전에 있는 법은 정의롭다고 가정한다. 즉 법에서 규정하는 폭력은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은 힘이다. 논란이 여지가 있으나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폭력은 정당한 따라서 합법적인 폭력이나 백주 대낮에 사람을 죽여 돈을 빼앗는 강도 살인은 불법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엄청난 가정이나 만일 법이 완벽하게 공정하고, 완벽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세월이 가면서 각종 폭력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즉 폭력과 법은 동전의 양면이다. 법에 제 구실을 하면 폭력은 설 땅이 좁아진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법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 폭력의 학습과 강화(Reinforcement)

사람은 선과 악의 개념을 생래적으로 타고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의 이론을 보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태어난 후 다양한 학습기제

를 통하여 학습 훈련된다고 본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주로 가정에서,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학교에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정과 학교를 넘어선 더 넓은 세상 즉 사회의 영향을 받아 어떠한 것이 옳은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이 처벌을 받아 마땅한 옳지 않은 행동인가를 배우게 된다. 현대 범죄학의 아버지로 추앙되는 서덜랜드(E.H. Sutherland)의 차등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첫 명제가 범죄는 학습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명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에 대한 비우호적인(Unfavorable) 태도 및 가치가 우호적인(Favorable)한 태도 및 가치보다 더 클 때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을 어겨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서 순환논리에 가까운 자명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덜랜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왜 어떤 이유로 법에 대한 부정적 혹은 비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는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이론으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에이커스(R. Akers)의 차등적 강화이론(Differential Reinforcement Theory)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키너(F. Skinner)의 강화이론을 서덜랜드의 차등적 접촉이론과 접목시킨 이론으로, 인간이 행동은 일종의 자극(Stimulus)으로 간주하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Response)에 따라 자극으로 작용한 행동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응이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라고 하였으며 감소시키는 것을 부정적 처벌(Negative Punishment)라고 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한 행동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보상이 따르면 그러한 행동은 증가할 것이며, 부정적인 처벌이 따르면 감소할 것이라는 어찌보면 당연한 내용이다.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처벌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즉 다양한 일탈행위가 줄어들 것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러한 행위는 증가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강화기제가 지속되면서 동전의 양면인 범죄와 규범 준수에 대한 태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규범을 위반해도 즉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규범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는 규범을 준수하는 행위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식한 사람, 앞 뒤가 막힌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적당히 규범을 위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오히려 능력있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강화이론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 다양한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

실은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휘둘렀을 때 처벌을 받기보다 보상을 받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면이 없지 않았다. 군사독재 정권을 보자 총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그들의 폭력 행위로 얻은 것이 많았다. 하루 아침에 실세로 등장한 그들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권과 결탁한 경제 권력은 정경유착을 통해 챙긴 액수는 엄청나다. 이른바 민주화가 된 이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법정에 섰고 처벌도 받았으나 그들이 한 행위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수천 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을 착복했으나 그가 받은 처벌은 미약하다. 재산이 29만 원뿐이라 벌금을 낼 수 없다는 사람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검은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식에게 물려준 것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인 폭력뿐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은 무시하는 것은 관행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업적지상주의는 다양한 불법, 다시 말하면 폭력의 관행화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 각종 입찰에서 나타나는 비리, 건설업계의 하도급 비리, 전세 및 탈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심지어는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서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부모도 적지 않고,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한 비리 등등 다양한 비리가 마치 관행처럼 행해졌다.

이러한 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해야 하는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폭력을 광의로 정의할 때 이러한 비가시적인 폭력은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 우리사회를 폭력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폭력화에 첫 번째 원인이라 생각한다.

## 2. 폭력의 정당화, 합리화, 중화(Neutralization)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원인은 이러한 폭력이 정당화, 합리화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이다. 마짜(D. Matza)의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자. 통제이론의 하나인 중화이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는 규범을 위반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정은 허쉬(H. Hirsch)의 통제이론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사 화가 났다고 해도 쉽게 때릴 수



있지 않다는 말이다. 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평상시에 생각하는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범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혹은 중화를 먼저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못된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자기의 규범 위반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말이다. 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쁜 사람의 돈, 불법적으로 번 돈을 훔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마치 산성에 알카리성을 더해 중화를 시키는 것처럼 그 자체만으로는 나쁜 행위이나 다양한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행위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당한 행위로 중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 중화이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중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버지가 쉽게 매를 드는 가정에서는 형이 동생을 쉽게 때릴 수 있다. 아버지의 구타가 자식의 입장에서 정당한 처벌이 아니라 아버지가 화가 나서 툭하면 자식을 때리는 가정에서는 폭력은 중화기제로 작용하기 쉽다. 아버지도 때리는데 나도 동생을 때리지 못할 이유가 뭔가? 교사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학생들은 그들의 폭력을 합리화할 수 있다. 마짜는 이러한 중화를 ‘비난자를 비난’하는 중화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중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제도권의 다양한 폭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합리화를 제공한다. 예컨대 국회에서 툭하면 국회의원끼리 치고받는 모습이 TV로 방영된다. 국민의 선량이라는 사람들이 말보다 주먹을 앞세우는 세상에서 합리화하기 어려운 폭력이 무엇이란 말인가? 장자연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상납, 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도된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다. 역시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형사사법 기관의 고위 간부의 술접대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접대 역시 다양한 성과 관련된 불법행위, 성폭력을 합리화시켜주는 구실이 될 수 있다. 누차 반복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위반할 때 과연 누가 규범을 지킬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러한 관행화된 폭력은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도 출세를 하면 예쁘고 젊은 탈렌트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러움, 이러한 생각이 우리나라에 만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 3. 폭력의 악순환 고리

마지막으로 폭력의 악순환에 대해 생각해본다. 폭력의 악순환이란 문자 그대로 폭력은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말이다. 폭력의 악순환을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보자.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학습이론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못된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며 며느리 노릇을 한 여인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못된 시어머니가 될 개연성이 크다. 시어머니 역할에 대한 학습의 대부분은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특징 중의 하나가 피해와 가해가 교차된다는 것이다. 즉 적지 않은 학생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말이다. 중학교 시절에 선배와 동료에게 학교폭력으로 시달리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후배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학교폭력이 관행화된 학교에는 상납고리가 있어 후배에게 금품을 갈취한 후 선배에게 상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후배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가해이고, 선배에게 상납을 하는 것은 피해라 생각할 수 있다. 폭력이 일반화된 사회, 관행화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 고리가 발생한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피해를 당하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를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악순환의 두 번째 고리는 저항적 폭력의 정당화이다. 부당한 폭력이 지속되면 저항을 불러온다.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민주화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법으로는 분명히 불법 시위이다.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은 외적인 모습을 보면 분명히 폭력이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인 시위를 하였고, 시위 과정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졌고,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였고, 점거한 건물을 파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적 폭력은 민주화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부당한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폭력 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주화 운동 당시 다양한 학교에 재단 비리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학생들은 이에 저항하였다. 학교 당국은 학칙을 내세우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원하는 바를 수렴하라”고 하였으나 대부분이 경우 학칙과 정당한 절차는 학생들의 요구를 피하는 방법에 불과하였다. 결국 학생들은 총장실 등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시험을 거부하는 등 물리적인 폭력으로 대항하였다. 폭력을 해사하는 학생들은 그들이 택한 방법을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학교 당국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용기와 희생이 따르는 의로운 행동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입장이 옳은가 그른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폭력은 저항을 불러오며, 저항의 수단은 대부분 폭력의 외양을 보인다. 비가시적 관행화된 폭력은 오히려 겉모습만 보면 폭력이 아니나, 저항적 폭력은 대부분 물리적 가시적인 폭력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모든 저항은 정당하다는 이상한 풍조가 생겨났다. 아무리 보아도 집단이기주의 이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폭력적인 시위를 하면서 마치 의거처럼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말이다. 요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도 이러한 점이 없지 않다.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곧 저항이며, 더 나아가 의거처럼 합리화된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막말녀, 폭행녀 등 역시 이러한 틀로 이해할 수 있다. ‘못된 어른에게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마구잡이로 대들어 혼을 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근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위(Authority)와 권력(Power)은 구분되어야 한다. 권위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권력이며, 권력은 다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물론 권위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모든 권위가 ‘정당화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권력과 권위가 혼재된 사회에서는 마땅히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할 권위도 불법적인 권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이러한 저항과 무분별한 권위에 대한 도전, 훼손은 마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 권위가 훼손된 사회, 그 결과 권위가 부재한 사회에서는 권력이 판을 치게 된다. 관행화된 제도적 폭력이 난무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 IV. 법과 인권

권력이 권위,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은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의 정당성이 필수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무엇에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 의식, 태도, 및 가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사회를 만드는 것은 쉽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다양성을 어느 정도 포용하면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법 이전에 도덕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도덕이란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이며 법의 기반이 되나 집단에 따라, 종교에 따라, 이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최소한의 도덕 지침이 사회에는 필요하며 이것이 법이라 생각한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권위가 성립하려면 그러한 권위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이 필요하며 권위가 훼손되었을 때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 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권위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그 결과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폭력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이 제자리에 서기 전에 폭력은 존재할 것이며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수록 권력이 판을 칠 것이며, 힘의 오남용인 폭력이 법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폭력을 개탄하기 전에 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법이 제자리에 서기 위한 조건

법이 제 기능,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논의를 단순화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법의 근본정신이 정당한가이며 둘째는 공정하게 집행 되는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살펴보자.

### 가. 인권에 기반한 법

법이란 무엇인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였다. 도덕은 무엇인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끼리 살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은 무엇일까?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내 힘을 오남용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줄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맹자 양 혜왕 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왕이 맹자에게 인이란 무엇인가 물었더니 맹자가 ‘왕께서 일전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측은이 여겨 양으로 바꾸라고 하셨다던데, 결국 양이 대신 죽은 것이 아닌가?’ 왕이 대답할 말이 궁색하였는데, 맹자가 바로 그러한 측은지심, 사람이 아닌 짐승이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짐승이라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인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짐승에 대한 배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동물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잡아먹기 위해 기르는 짐승도 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을 하고,

애완동물도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이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 생각한다. 왜 인권을 서로 인정하고 배려해야 하나? 이것에 대한 답은 모른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 이외에 할 말이 많지 않다. 그러나 서로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회는 흠스가 말한대로 ‘만인 대 만인의 싸움터’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사람이 따라야 될 바를 규정한다는 측면이고, 따르지 않을 때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가 법의 선한 면이라면 둘째는 처벌을 행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강제가 따른다. 심지어는 사형도 시키지 않는가? 사회의 기본 도덕,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합당히 처벌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지 어렵다.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은 세월이 가면서 법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통제가 일종의 필요악처럼 따른다. 그런데 일부 법을 보면 통제를 위한 통제가 마치 목적으로 위장된 것도 있다. 즉 다른 사람의 배려인 인권에 기반하지 않고,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유지 존속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법에는 저항이 따르고 저항을 누르기 위해 공권력이 오남용되면 그러한 법은 설사 강제력이 있을지 모르나 정당한 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세상이 복잡하다보니 인권과 집단 이기주의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도 적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 법을 만들 때 조심해야 한다. 인권이 아니라 통제, 더 나아가 기득권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학칙만 해도 그렇다. 말로만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하면서, 학칙의 적지 않은 내용이 통제를 위한 것이라면 학생들이 따르기 어렵다. 회사의 정관, 더 나아가 국가의 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국가의 법이 제대로 기능할 때, 회사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정관 혹은 사칙이 제 자리를 설 것이다.

#### 나. 공정한 집행

좋은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공정히 집행하는 것이다. 역설일지 모르나 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 사회의 법, 법전에 있는 법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철학자와 법학자는 좋은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법을 많이 만들었다. 법의 선진국은 이러한 노력 끝에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전에 적혀있는 죽은 법, 형식적인 법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법이 있다. 한편 후진

국의 법은 이러한 법을 취사선택하여 걸모습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법이 있다. 그러나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죽은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럴까?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구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설사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집행해도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우리나라 법 집행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잡힌다”는 사회적인 통념이다. 이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닌 건 관계없다.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 죽은 법,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 사법당국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운다. 상법당국의 책임자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전모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매번 국민에게 약속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사 결과를 대하는 많은 국민은 이번에도 “몸통은 따로 있는데 잔가지만 건드렸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태가 아무런 근거 없는 불신풍조 탓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불신풍조가 하루 아침에 아무런 근거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뎀 굴뚝에서 연기날까? 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결국 힘 있는 사람은 법 위에 군림하여 법망을 벗어날 수 있으며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힘 없는 민초라는 허탈감 자괴감에 빠져들게 만든다.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기고도 빠져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법을 지킬 사람은 많지 않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곧 힘이고 출세라면 법을 하는 수 없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삶인가?

이러한 세태의 대표적인 유형은 이른바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묘한 말이다. 굵직한 사건, 나라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비리, 많은 경우 정경유착성 비리가 터져 나오면 적지 않은 경우 사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치적 결단 심지어는 용단이라고 미화를 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그 나름대로 변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밝혀지면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 커 대를 위해서 밝히지 않고 덮어야 할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살신성인 때문일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이다. 이러한 용단을 내린 사람도 아마 믿지 않을 것 같다. 왜 우리나라는 정치권력이 법보다 우선할까? 완벽한 법은 있을 수 없으나 있는 법이라도 철저히 지켜야하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의 최후 잣대가 법이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인 모든 분쟁은 법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설사 완전하지 않은 법이라도 그것만이 문명화된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없다면 힘이 좌지우지할 것이며 이러한 힘은 곧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는 경제적인 힘, 경제적인 힘보다는 정치적인 힘이 우선한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적인 결단으로 그들의 행동을 은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때의 정치적인 결단은 정치적인 권력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인 권력은 다름 아닌 정치적인 폭력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제헌절을 전후로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마치 그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연설도 하고 훈화도 하나, 사실 우리나라의 법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형사사법당국이 제 자리를 서기 힘들다. 정치권력의 하부 조직으로 간주되는 사회,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그들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형사사법기관에서 이른바 출세를 하려면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말한다. 법전에 적혀있는 법은 중요하지 않다. 공정하게 집행되는 법,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 그래서 그 누구라도 법을 위반하면 응분의 처벌을 받기 전에 법이 제자리를 설 수 없다. 법의 권위는 공정한 집행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V. 맺는 말

헤겔은 정신 혹은 의식이 세계의 기반이며 세계정신의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이 세상은 변한다고 하였다. 한편 마르크스는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삶, 아주 쉽게 말하면 먹고사는 방식이 세상의 근본이며 이러한 먹고사는 방식, 유식하게 말하면 생산양식의 변증법적 변화를 통하여 이 세상은 보다 좋은 세상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다. 의식과 실존적인 삶,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출발인가?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의식과 실존은 마치

닭과 달걀처럼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실존적인 삶의 모습과 의식을 분리하기 어려우며, 의식과 분리된 삶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의식과 실존적인 삶이 하나로 통합되어 의식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의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실생활에서 법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올바른 법의식은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 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데 법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법의식을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특히 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는 해야 한다. 설사 겨란으로 들을 치는 무모한 짓일지 모르나 그래도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이란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오늘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인성교육의 부재’를 지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과연 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인성이란 곧 사람의 본성을 뜻하는 것이며 인간의 본성의 핵심은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인권이 보장되려면 법이 제 구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성교육은 법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법과 불법은 동전의 양면이며, 모든 불법은 폭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시적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라 비가시적 제도화된 폭력이 더 무서운 폭력이라고 지적하였다. 아무리 사소한 폭력도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용납될 수 있는 어떠한 폭력도 있을 수 없다.

학교폭력, 교육현장에서 자라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나 사실 우리나라에 난무하고 있는 다양한 폭력의 한 모습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성폭력, 군대폭력, 사이버폭력 등 가시적인 폭력의 한 형태이며 이 배후에는 정치폭력, 경제폭력, 심지어는 종교를 빙자한 폭력도 있다. 이 모든 폭력의 근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학교폭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힘을 오남용하지 않는 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없어질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폭력이 일시에 쉽게 없어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의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는 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마지막 보루인 법을 가르쳐야 한다. 법을 지키는 것은 곧 상대방의 인권에 대한 배려이며, 상대방의 인권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나의 인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 주제 발표 1 ••

**특수아동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주제 발표 1]

## 특수아동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이 현 수(영동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II.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 IV. 나오는 말
- \* 참고문헌

### I. 들어가는 말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자살과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위의 보도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 학교 관계자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수립 및 여러 번의 법 개정, 국가 기관 및 여러 단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이 사라지기는 커녕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것이다. ‘장애’가 대상의 취약성 혹은 폭력 위협에 대한 민감성에 대하여서는 그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져 왔는데,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초점으로 함축될 수 있다.

첫째, 학생 폭력 피해의 위험요인으로서의 장애의 심각성으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거나(Kim, 2010),

학대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위협에 보다 더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노충래, 2002, 이주희, 이양희 2000).

둘째, 장애학생이 폭력의 경험을 한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각하고 가중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자아개념 등 정서적 발달 측면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의 발달적 과업의 성취가 비장애학생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하나, 폭력을 경험하면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Beirne-Smith, Patton, & Kim, Mansell, Sobsey, & Moskal, 1998, 김유리, 2010).

셋째, 장애학생 폭력은 더 심각한 장애의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시적 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정서적 후유증,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폭력의 영향력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무력감, 주의집중결핍, 대인관계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서 및 행동장애가 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되어져 왔다. 즉,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나 인식의 저하 또는 파괴를 경험하고 이로 인한 우울 및 불안, 슬픔, 분노 등 내면적 장애와 적개심과 분노 등에 기초한 공격적 행동이나 비행 등 외현적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구차순, 2007; 김광혁, 2009).

최근의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겠다는 헌법적 요청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생각해볼 때 사회적 무관심 또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장애인 특히 ‘장애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잘 실현되는지를 점검해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요인은 장애학생이 가지는 취약성으로 인한 폭력의 위험 가중성, 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한 장애유발 등 폭력의 고위험 요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심각한 피해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빈번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폭력 수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각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학생 중 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폭력을 당했어도 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는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에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장애학생들이 빈번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폭력수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각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장애학생 중 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폭력을 당했어도 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로 어떠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 학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고찰 및 개선점을 파악하는 시작점일 것인데 사실 장애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 대상의 수, 연구자의 수,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등 복합적 이유로 이러한 실태조사가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실태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유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시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자신의 피해에 대해 정확히 진술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보다 좀 더 쉽게 학교폭력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Morrison과 Furlong(1994)의 연구에서 특수학급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언어적 폭력과 괴롭힘을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Flynt와 Morton(2004)은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에 비해 괴롭힘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abuzoka(2003)의 연구결

과도 다른 결과와 다르지 않다.<sup>1)</sup> 학교 구성원의 수로는 소수이지만 다른 비장애학생들과 비교하여 좀 더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향이 강하다면 우리는 이들에 대한 소극적인 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이 학교폭력을 통해 느끼는 고통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 가.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경우 그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욕설 및 모욕, 무시,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있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폭력의 대상이 된 학생 1인 또는 1인 이상의 상대로 하여금 물리적 가해를 당했을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차기, 찌르기, 목조르기, 꼬집기 및 물품을 이용한 폭력, 예컨대 칼, 형광등, 쇠파이프, 마포자루, 책걸상, 체인 등을 이용한 폭력행위로 정의한다. 둘째, 금품갈취는 학교폭력의 흔한 형태중 하나로, 보통 구타와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범행이 한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액수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금품갈취는 법적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취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금품갈취의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의 경우 그저 장난삼아 혹은 별생각 없이 했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욕설 및 모욕은 큰 모멸감을 느끼고, 개인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폭력보다 언어적인 폭력을 더 두려워하기도 한다. 욕설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별명 따위로 불림으로써 피해학생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대인기피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넷째, 괴롭힘은 말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로 욕설, 놀리기, 단점 말하기 등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억압감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은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집단따돌림은 최근 발생하는 학교 폭력의 유형 중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 오원석,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괴롭힘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2권 4호 pp.168 재인용

### 나.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사례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들은 학교 내의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 인식개선을 강제조항으로 정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의 장애학생 폭력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이 장기간에 걸쳐 같은 반 남학생 4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 인천 북부교육청 관내 A초등학교와 장애학생 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열두 살 지적장애 2급 김소라양(가명)이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함께 수시로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과 4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한 여학생은 “남학생들이 1학기 초부터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발로 장애를 가진 친구를 차는가 하면 남학생 2명이 장애친구의 팔을 양쪽에서 각각 잡고 또 다른 남학생은 발로 장애친구의 발을 차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폭력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장애학생에게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원인 제공자가 장애학생이다. 서툰 말로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물어올 때 그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짜증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비장애 학생들은 장애를 가진 소라가 자기통제가 안 된 채 아무 때도 질문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는 등의 행동이 자신들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권모(43·여)씨는 아들 A(13·1급 정신장애)군이 당한 일을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A군은 쉬는 시간만 되면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아이들은 앉아 있는 A군을 발로 차고 연필로 찔러댔다. 복도를 지날 때는 어깨로 쳐서 넘어뜨리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일도 있었다. 권씨는 “제작년부터 옆에 누가 오기만 해도 아이가 기겁을 한다”며 한숨을 지었다.

금천구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B(14)양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당한 일은 정도가 더 심하다. 또래 여학생 4~5명이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담긴 대변을 먹으라고 시켰다. 대변을 먹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고 B양은 큰 상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 32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 교육적 접근

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전체 학교폭력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학생인 비율이 지난 2009년 1.2%에서 지난해 2010년에 1.5%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 비장애우 학생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을 둔 김모(47·여)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5학년 때 수련회에 간 아들이 변기에 넣었다 뺀 과자 받아먹었던 일이 있었던 것. 김씨는 “아이들의 장난에 속수 무책으로 당한 아들이 중학교에서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을 원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일반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례들은 일반학교에서 많이 일어난다. 비장애 아동이 장애아동의 이해 부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이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례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닥친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학교당국과 관할 교육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안 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 3.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 가. 학교폭력과 학교폭력법

2003년 6월 23일 현승일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의 신고의무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 기틀이 세워짐으로써 학교폭력 사건은 개인과 학교가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변모되게 된다. 학교폭력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권 차원에서 해결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교폭력 사건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행 학교폭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sup>2)</sup>은 무엇인가? 간단히 정리하면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당하는 학생에는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구분이 없다. 즉, 장애학생이든 비장애학생이든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기구와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장애학생간(혹은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든(혹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문제라 인식해야 할 것이다.<sup>3)</sup> 이러한 인식이 선행될때 ‘장애학생의 학교폭력’의 문제는 해당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이 해결해야하는 공동의 과제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 나.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사건의 접근 방식과 문제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각급학교에서 같은 기준과 같은 처리 절차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제정된 것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학교폭력법의 제대로 된 정착을 원하는 교과부 및 교육청 등은 학교현장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이 학교폭력법 자체의 당부당에 대한 논의를 떠나 시행되고 있는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8, 2012.1.26, 2012.3.21><시행일 2012.4.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비장애학생에게 일어난 학교폭력의 문제와 장애학생에게 일어난 학교폭력의 문제를 똑같은 학교폭력의 피해, 같은 고통으로 느끼라는 것이 아니다.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은 같은 학생이며 장애학생에게 발생한 학교폭력이라 하여 이 해결을 특수교사에게만 떠넘긴다던지,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비장애학생들에게 일어난 학교폭력과 다르게(좀 더 쉽게) 넘어가려는 행동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법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고찰해 보고 개선점을 논해본다.

### (1)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은 그 단어로 말미암아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어릴 때 한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다. 학교폭력도 ‘학교’라는 단어에서 주는 느낌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이라는 활동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느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그 동안 학생 간에 일어났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성인과 유사 또는 동일한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학교폭력을 규제하는 법이 생겨나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학교폭력은 대상을 학생으로 할 뿐이지 ‘범죄’이다.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해행위가 무엇인지 피해행위가 무엇인지를 알며 학교와 교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인지 및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학교폭력법은 예전의 생활지도의 모습을 탈피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활지도부장교사에게 의존하여 학생들을 선도 및 지도활동을 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학생을 관리감독하는 모든 교사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 (2)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일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장애학생’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려는 상황이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 사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 공동의 과제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닌 장애학생을 전담하는 특수교사에게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도록 일임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비장애학생을 두둔하거나 장애학생의 피해 진술확보의 어려움으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sup>4)</sup> 이러한 학교의 모습이 전체 학교모습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비장애학생의 학교폭력문제보다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을 때의 대응이 학교 관리자 및 교사의 대응에 따라 각 학교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절차로 처리

4)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2010.6.28) 자료 인용.

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해야 한다는 학교폭력법 제정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도 특수교사의 몫이 아니라 비장애학생과 같이 학교차원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사건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형식적 평등의 담보)

특히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지도 책임이 특수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장애학생이든 비장애학생이든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 학생을 지도하는 관계자 모두가 학교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해결이 학교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교장·교감에 대한 학교폭력의 이해와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리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지속적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이러한 학교폭력 연수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해당 문제는 학교 구성원, 사건 관계자의 공동과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선행된 후 법적 처리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3) 학교폭력법에 대한 고찰 및 개선 방안

학교폭력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 방법과 학교의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폭력법 자체가 장애학생들을 위한 적극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1)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5)의 의미

학교폭력법은 2009년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보호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는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장애학생에

---

5)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3.21><시행일 2012.4.1>  
 [본조신설 2009.5.8]

대한 특별 보호 규정으로 유일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교장은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법의 개정 역사를 보았을때 2009년이 되어서야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 규정이 삽입된 것, 2012년 좀 더 큰 폭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은 제16조의2 하나라는 것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 규정의 법적 성격을 장애학생에 대한 소극적 보호를 선언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별히 학교폭력 피해 대상 중 ‘장애학생’을 특정하여 규정하여 학교에 장애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특수학급 교사, 통합학급 교사 그리고 교장·교감은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른 비장애학생들보다 좀 더 높은 주의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학교폭력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규정 신설로 본 장애 학생의 보호 취약

2012년 3월 21일 개정되어 추가된 학교폭력법의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으로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호<sup>6)</sup>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실을 알린 신고·고발 학생들에게 보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설·추가된 조항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이라면 비장애학생보다 더 쉽게 학교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해한 학

6)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8, 2012.1.26, 2012.3.21><시행일 2012.4.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생에게는 좀 더 강도 높은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한다. 앞서 제16조의2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학교 관계자와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는 근거조항으로 인용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끼친 경우 다른 일반의 경우보다 좀 더 강도 높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는 한 학교와 자치위원회의 성격에 의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비장애학생보다 약자인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법적 통념으로도 훨씬 더 좋지 않은 학교폭력의 행동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행위시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Ⅲ.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앞서 학교폭력법이 학교현장에 적용됨에 있어 학교차원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법적 미비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내용을 주로 서술하였다. 하지만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학교폭력 발생을 전제로 한 사후조치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나와 다른 것에 대해 관용하며 평등에 대한 인식,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많은 단체에서 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깨워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활동과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 그들의 행동양식을 만들어 가며 옳은것과 그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자치법정’으로서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 학생자치법정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Teen Court)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직접 재판정을 구성하여 동료 학생을 심리, 변호, 재판한다. 심리 대상은 지각이나 두발불량 등 비교적 경미한 교칙위반을 되풀이하여 누점벌

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학생이다. 대개는 배심원단에서 처벌 내용을 재판부에 권고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키고 교칙 적용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한다. 나아가 또래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돕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학생자치법정은 학교 구성원의 전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정 주제를 체험활동 하기 위해 모인 소수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시스템은 아니며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된다. 하지만 학생자치법정은 지정된 별점 수준까지 누적된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정 기간동안 별점 누적이 완료되면 집중적인 학생자치법정 심리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자치법정이 열리는 현장만 가지고 본다면 학생자치법정 참여 구성원 학생에게는 집중적인 재판교육과 규칙, 규범에 대한 생생한 체험 시간이 될 수 있다.

사실 학생자치법정은 학교 교칙 위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그들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 자신의 교칙 위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힘을 함양하도록 기획된 것이다.

이러한 학생자치법정의 형식을 따르되 법정에 회부되는 쟁점을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차별, 장애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학교폭력 등을 주제로 하여 법정을 구성해 봄으로써 법정을 구성하는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 해보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실제 학생자치법정의 효과를 약 4년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칙위반으로 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좀 더 공정한 느낌을 받으며 다른 학생들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특히 교칙위반행동으로 법정에 회부되었던 학생이 다른 친구를 판단하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보아 또다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자신의 행동 제어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와 대화를 통해 폭력 예방 차원에서 부모와

잡은 대화, 폭력은 죄라는 인식, 배려, 인성 및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고 자녀가 올바르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는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질 향상과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상담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방안, 수업 시수 감축과 수업 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학생지도를 위해 장애이해, 학생관리 방법, 학생과의 유대감 및 배양훈련, 상담, 학교폭력 대응 방안 등의 직무연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반학교에서는 교사, 비장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에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장애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놀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를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인성 및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시적인 땀질식의 대안이 아니라 거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와 교대, 또 교직 이수를 하는 학생들은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성 및 인권교육’을 3학점으로 지정하여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에서는 장애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 간의 어울리고 함께 활동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공간, 행사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 장애학생과 부모, 가족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피해 의식과 상당 기간 고통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과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학교 폭력의 행위유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방, 치료, 상담, 보호에 중점을 두는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IV. 나오는 말

장애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일이



발생하고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정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양상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특히나 학교폭력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원인은 개인적·환경적 요인 등 굉장히 다양하지만 장애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의 피해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약해보여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교육적 접근 즉, 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이해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이해교육은 여러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타인에 대한 관용, 정의, 평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가 개발한 학생자치법정의 모델을 수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 차별 등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 발생 시 사후적 조치로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사와 학교 관리자가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에 학교폭력 사건을 좀 더 잘 인지할 수 있으며 교사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법에서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교폭력 사건이 법적인 문제가 된 이상 학교에서도 많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으며 교사 개인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사의 지도책임이 훨씬 무거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우려와 탄식이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한 인간의 삶을 짓밟는 수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생들을 한 사회에 역할할 수 있는 인간으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기에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교육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적극적 지원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자는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비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장애이해교육과 가정교육, 장애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 적응과 폭력 대응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며 공동생활의 영역이다.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에게는 학교폭력 직무연수강화, 상담 및 학생 관리와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실태조사가 부실하다. 지금까지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며, 이에 따라 최근 학교폭력의 동향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넷째, 학교폭력관련법의 적극적인 시행과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학생 폭력 예방에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라는 요인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보고 가해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 방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0).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별 사례(2010.1.1~12.31)
- 고성희(2007).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폭력경험과 폭력에 관한 인식차이,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9호 pp.683-691.
- 김성기(200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0권 2호, pp.27-45
- 김유리(2010).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 9(3), 71-89.
- 김현철(20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 시론적 고찰-, 법교육 연구 제5권 제1호, pp.69-83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한빛 문화사.
- 오원석(2010).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괴롭힘 특성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2권 4호, pp.167-189
- 이진국(200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입법정책 제1권 제1호(2007년 6월) pp.93-127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10).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 전권배(20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검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8). 「2007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Astor, R. A. Behre, W. J. Fravil, K. & Wallace, J. M.(1997).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2(1).
- Kim, Y.(2010). Personal safety vocabulary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5(2), 312-319.

•• 주제 발표 2 ••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주제 발표 2]

##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sup>1)</sup>

정 승 재(장안대 교수)

- I. 서론
  - II. 스포츠폭력의 개념과 실태
  - III. 스포츠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 IV. 스포츠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법·인권교육
  - V. 결론
- \* 참고문헌

### I. 서론

사실 체육계 내에서의 폭력은 일상화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스포츠선수에 대한 체벌이나 구타 등 폭력은 “엘리트스포츠”의 구조적 병폐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묵인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정희준, 2007).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스포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그 사례로 즐겨 드는 예는 2007년 발생한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팀 박감독의 여자선수 성추행사건과 2008년 초 KBS시사기획 <쌈>의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이다. 성폭력이라는 자극적 요소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선수의 인권에 대한 관심의 시초는 2004년 8월 경희대학교에 제출한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스포츠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정승재, 2004)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운동선수의 인권상황에

1) 이 논문은 2012년도 장안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고, 그 결과 2008년 말 국가인권위원회의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가 실시되면서 운동선수에 대한 인권문제가 이슈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실태조사에 의하면, 폭력의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139명중 898명이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여 무려 78.8%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경험자도 818명으로 71.8%에 이르고 있다.

폭력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에서는 여전히 운동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스포츠의 집단성 경쟁성 폐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을 입법적으로만 해결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스포츠계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선수에 대한 법과 인권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스포츠계의 폭력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법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II. 스포츠폭력의 개념과 실태

### 1. 학교스포츠와 스포츠폭력과의 관계

학생선수를 비롯한 스포츠선수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성과주의에 빠져있는 엘리트스포츠 위주의 페러다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스포츠를 그 내용에 의하여 구분을 하면 생활스포츠와 전문(엘리트)스포츠로 구분할 수 있는바(정승재, 2004, 14면 이하), 스포츠폭력이 발생하는 영역은 전문스포츠 영역이다. 그것은 전문스포츠의 보여주는 스포츠로서의 성격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고도의 기량을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과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성과주의는 국가주도의 통제, 소수 엘리트선수의 육성, 일반사회와의 단절 등을 특징으로 한다(류태호외, 2003). 과거 냉전시대에는 올림픽경기의 순위가 국가의 경쟁력순위와 동등하게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스포츠강국 중국을 문화적 강국이라 평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하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스포츠계에서는 엘리트스포츠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엘리트스포츠가 스포츠의 정수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 가. 엘리트스포츠의 합숙구조

성과위주의 엘리트스포츠는 자연스럽게 성과를(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숙훈련 등 반 인권적 관행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합숙훈련은 학생운동선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모든 요소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합숙훈련으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외부와 차단된 합숙소는 폭력, 성폭행 등 반인권적 행태를 유발한다. 즉, 합숙훈련소 안에서의 생활은 일반 학생들과의 분리·단절을 의미하고 자기들만의 폐쇄적 문화를 형성하고, 결국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일반 원칙들이 무시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즉 일반사회질서와 다른 그들만의 질서문화를 형성하고 그 질서 속에서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된다.

#### 나. 엘리트스포츠의 성과주의

게다가 이들은 우수한 기량 발휘라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이들은 운동 이외에 어느 것도 꿈꿀 수 없는 운동하는 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 학생들이 입시라는 제도로 인하여 존귀한 인간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강도가 센 운동하는 기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일반공부는 대다수의 학생이 경쟁을 함으로써 1등만이 아니라 2등 3등도 살아갈 기회가 있지만, 운동선수는 소수의 집단이 경쟁을 하고 있어, 결국 1등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경쟁에서 밀려났을 경우, 이들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낙오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후배를 폭행하고, 자기가 폭행을 당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다. 스포츠의 남성적 문화

스포츠가 남성문화의 전형이라는 사실은 스포츠계를 구성하는 인적 차원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2007년 현재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중 남자의 비



율이 77%로 압도적으로 높다. 체육종목도 남성 위주의 종목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하는 스포츠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엘리트스포츠의 경우 보여주는 스포츠로서 그 가치 중심으로 살펴봐도 남성적 문화일 수밖에 없다.

또한, 소수의 승리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경쟁구도에서 감독 등 지도자나 선수, 심지어 학부모등 보호자들조차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차별이 경기력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향상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 또는 팀웍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함으로써, 차별을 훈련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구타가 경기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5%에 이른다고 한다(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05). 또한, 강자승리와 무한경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혹독한 훈련, 공격성과 적극성, 성취욕구 등 “남성적 가치”는 운동선수에게 최고의 덕목으로 권장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의식은 스포츠를 남성적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고, 체육계 현장에서 지도자와 조직관계자 등 중요위치는 대부분이 남성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이러한 남성 우월적 지배구조는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러한 성폭력은 성별로 위계질서와 권력불평등을 당연시여기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 2. 스포츠폭력의 개념

### 가. 일반폭력

폭력이란 불법적인 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유형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과, 분노 공포 또는 힘의 과시 등이 행동으로 표출된 표현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폭력은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포괄한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성폭력

스포츠에서의 성폭력은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을 포괄한다. 성폭력은 성희롱까지 포괄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급진적 관점에서부터,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행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을 유도하는 행위”, 강제나 위계 또는 불평등한 지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sup>2)</sup>

IOC는 2007년 “IOC의 체육계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에 성희롱과 성적 학대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성희롱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원치 않는 강압적, 의도적 비의도적, 합법적 불법적 행위를 말하며, 성적 학대는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3.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실태

### 가. 원인

스포츠계는 특수한 인적 관계 때문에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선수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측근들과 권력관계(선생과 제자, 혹은 선배와 후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력관계는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수들은 권력관계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일반 사회와 물리적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오랜 시간 함께 보내는 환경에 처해 있어 그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특히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도자의 평가가 그들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관계는 더욱 폭력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여러분들은 1년동안 며칠 정도 시합을 위하여 합숙하나요?”라는 질문에 “항상 ”매일“ ”365일“이라고 응답한 대부분이어서 결측 처리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36)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은 이들이 대학입시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운동을 이유로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이 개념에 대하여는 <http://sports-in-sport.or.kr/servlets/rights/front/guideLine/action/GuideLine10#>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익센터 홈페이지 참조.

### 나. 실태

스포츠계에서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고전적 이야기이다. 어쩌면 스포츠와 폭력은 앞서 이야기한 남성적 문화의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 (1) 폭력의 경험

국가인권위의 2008년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폭력의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전체조사대상자 1139명중 898명 78.8%의 학생선수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유형별로는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기합이나 열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64.3%)가 가장 많아 훈련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폭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평균 43.7%, 여자고등학생은 51.8%로 훈련과 관계없는 폭력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39)

성폭력의 경우 전체조사대상자 1139명중 818명이 여러 가지 질문 중 한 가지라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이 818명으로 71.8%에 해당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54) 이것은 일반폭력을 당한 학생(898명)중 대부분(819명)이 성폭력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폭력 행위자와의 관계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폭력 행위자는 코치와 선후배로 나타난다.

다음 <표 1>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나타난 한 예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45).

<표 1>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폭력 실태 조사

(단위: 명, %)

구분		코치	감독	친구	선후배	기타	대상자 수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23(41.8)	6(10.9)	2(3.6)	29(52.7)	0(0.0)	55
		고등학생	62(35.0)	19(10.7)	3(1.7)	114(64.4)	3(1.7)	177
	남학생	중학생	29(32.6)	12(13.5)	7(7.9)	52(58.4)	4(4.5)	89
		고등학생	63(36.8)	23(13.5)	7(4.1)	103(60.2)	5(2.9)	171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99(87.6)	14(12.4)	0(0.0)	21(18.6)	0(0.0)	113
		고등학생	162(66.1)	38(15.5)	0(0.0)	86(35.1)	0(0.0)	245
	남학생	중학생	92(79.3)	18(15.5)	0(0.0)	25(21.6)	2(1.7)	116
		고등학생	153(64.6)	40(16.9)	1(0.4)	89(37.6)	2(0.8)	237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78(75.0)	30(28.8)	0(0.0)	23(22.1)	2(1.9)	104
		고등학생	146(62.7)	51(21.9)	4(1.7)	87(37.3)	3(1.3)	233
	남학생	중학생	81(69.8)	22(19.0)	3(2.6)	30(25.9)	1(0.9)	116
		고등학생	122(61.6)	46(23.2)	2(1.0)	70(35.4)	4(2.0)	198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맞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82(88.2)	11(11.8)	0(0.0)	14(15.1)	0(0.0)	93
		고등학생	140(82.4)	28(16.5)	0(0.0)	15(8.8)	2(1.2)	170
	남학생	중학생	80(76.2)	19(18.1)	0(0.0)	20(19.0)	3(2.9)	105
		고등학생	111(63.8)	30(17.2)	0(0.0)	60(34.5)	1(0.6)	174
운동부에서 옷을 벗으라는 체벌이나 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7(87.5)	0(0.0)	0(0.0)	2(25.0)	0(0.0)	8
		고등학생	9(52.9)	1(5.9)	0(0.0)	10(58.8)	0(0.0)	17
	남학생	중학생	5(29.4)	2(11.8)	0(0.0)	10(58.8)	0(0.0)	17
		고등학생	16(47.1)	7(20.6)	0(0.0)	16(47.1)	1(2.9)	34

\* 복수응답 허용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여고 선수는 코치(35%) 선후배(64.4%)를, 남고생은 코치(36.8%) 선후배(60.2%)를 지목했다. 이는 코치와 감독 등 지도자뿐만 아니라 선후배 사이에도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혹은 훈련을 빙자한) 체벌이나 폭력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성폭력관련 질문인 옷을 벗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수가 1/10수준으로 급감한다. 응답을 거부한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의 경우 선배의 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 52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 ·인권 교육적 접근

나고 있는 점은 스포츠현장에서 선후배간의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학교 운동부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 등 비공식적인 형태의 폭력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3) 폭력장소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훈련장소(73.5)와 합숙장소(평균22%)이다. 훈련과 관련이 없는 폭력 그리고 성폭력은 합숙장소에서 많았고, 훈련과 관련 있는 폭력은 훈련장소에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과 훈련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훈련을 빌미로 한 폭력이 특히 많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 (4) 폭력에 대한 대처방식

이러한 폭력에 대처하는 형태는 소극적 대처가(기분은 나쁘지만 참거나 모른 척 한다,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인다, 얼굴을 찡그리고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한다, 그냥 넘어간다 1264명) 적극적 대처(싫다고 분명히 말한다, 가족 선생님 친구 등의 도움을 구한다,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다,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난다 839명)보다 더 많았다. 즉 학생선수들은 폭력에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남학생이 더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폭력적 권위나 권력에 대한 남성의 순응적 태도를 마타넨다고 볼 수 있겠다.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다”를 소극적 대처로 분류할 경우, 폭력에 대한 소극적 대처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 (5) 폭력이 스포츠선수의 기량에 미치는 영향

우선 폭력을 당한 선수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느낀다”는 대답이 56.4%로 가장 많아 폭력은 선수의 기량향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국가인권위원회 48쪽) 그러나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기량향상을 위해서라고 100% 답할 것이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경우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54.7%),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50.2%)이고 특히 여중생의 경우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63.3%)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폭력은 기량향상을 저해시키는 요소일 뿐이다.

### Ⅲ. 스포츠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 1. 일반폭력범죄의 처벌과 규제

##### 가. 형법상의 규정

폭력관련 범죄는 일반규정으로서 형법 제25장(제257조~26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폭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동선수의 구타에서 자주 발생하는 몽둥이 등 기구를 이용한 폭력은 특수폭행으로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적 상습적 폭력행위 및 흉기 등 기타의 물건을 휴대하고 범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동법에서는 상습적 폭행, 협박, 등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집단적 폭행도 가중처벌하고 있다. 단체의 구성과 활동에 대하여도 규제하고 있어 운동부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이 행사된다면 이 또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이러한 선수폭행을 묵인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특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바, 동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자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4조) 또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신고의무, 긴급전화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특히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의 위험성에 대비하고자 한 입법적 장치라고 할 것이다.

####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32장(제297조~제30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각종 성폭력범죄가 다양화·집단화·지능화 됨에 따라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첫 번째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국가의 책무(제3조) 및 성폭력 실태조사(제4조), 성폭력 예방교육(제5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는 미흡하고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범죄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을 세분화하고 형법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법은 제1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특수강간(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등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학생선수에 대한 성범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해당할 수 있다.

## IV. 스포츠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법·인권교육

### 1. 스포츠폭력에 대한 대처원칙

학교 내에서의 스포츠폭력은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법·인권교육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은 훈련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간의 신체접촉이 많고, 합숙훈련과 전지훈련 등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의 활동이 많고, 지도자와 선수, 선수들 사이에도 선배와 후배의 위계질서가 명백히 존재하는 운동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폭력행위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운동부에서는 폭력 예방대책을 세우고, 교육을 시행하고, 신고, 감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문제는 선수들이 인권의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출신의 지도자들의 인권의식도 문제가 된다. 스포츠선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명확한 폭력의 개념 정립
- 스포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활동임을 명시
- 정책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
-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시행
- 신고절차에 대한 구체화
- 감시 감독기구의 상설화
- 구조센터 및 상담센터의 확충

### 2. 외국의 예방교육 사례<sup>3)</sup>

#### 가. 미국의 대책

- (1) 폭력 및 성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상황을 명시
- (2)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법, 폭력 발생의 원인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 지

3) 스포츠인 권익센터 홈페이지(<http://sports-in.sports.or.kr/>) 참조



도자용으로 브로셔를 제작하여 학교운동부 현장에 보급

- (3)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원보장 및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둠.
- (4) NFHS(미국고등학교체육연맹)에서는 학교운동부 성폭력 예방 십계명을 만들어놓고 지도자와 학생 간 서약서를 만드는 등 코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NFHS, 학교운동부 성폭력 예방 10계명

- ① 성적 농담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 혹은 학생선수 앞에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언어 혹은 노골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 ② 성적인 영상물 제공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교를 포함한 어떠한 환경에서든 결코 학생선수 앞에서 명백한 성적 표현 혹은 음란 사진이나 자료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 ③ 과도한 사적 대화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에게 직접 혹은 전화상으로 지나친 사적 대화를 피해야 한다.
- ④ 과도한 사적 편지, 선물 등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과도한 사적 편지, 이메일 혹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⑤ 신체나 외모에 대한 언급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에게 복장이나 구체적인 신체적인 특성과 같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언급을 피해야 한다.
- ⑥ 신체 접촉 최소화: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신체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
- ⑦ 단독의 차량 동승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를 집에 혼자 혹은 단체일지라도 차를 태워 집에 데려다주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 ⑧ 학교 밖에서 1대1 만남 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학교 밖(특히, 학생선수의 집)에서 학생선수와 1대1 만남을 피해야 한다.
- ⑨ 단체여행 시 보호자 동행: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와 함께 단체 여행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성인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 ⑩ 사적인 데이트 절대금지: 교사와 코치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결코 학생선수와 데이트해서는 안 된다.

#### 나. 호주의 대책

- (1) 호주체육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 차원에서 스포츠와 인권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정책 및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음.
- (2) Play by the rules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종목별 스포츠단체들이 법적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전략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음.

- (3) 2001년도에 호주수영연합, 호주스포츠볼협회, 호주체조협회, 호주씨핑연합 등 4개 단체를 중심으로 폭력예방 운동을 벌이면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차별, 아동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스포츠전략을 세우고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 매년 2차례에 걸쳐 소식지(Harassment-free Sport Newsletter)를 발간함.
- (4) 호주스포츠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Sport)과도 연계하여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연구를 수행
- (5) 스포츠지도자들이 철저히 선수폭력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또한 폭력 및 성폭력 발생 시 선수 인권침해 사례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음.

#### 다. 스코틀랜드의 대책

- (1) 스코틀랜드 정부의 경우, “Child Protection in Sport”를 별도로 만들어 학생선수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 정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캠페인 실시(이를 위한 상세한 학생 선수 보호 가이드선스 마련)

<b>학생 선수 보호 가이드선스(학생선수 지도 시 다음의 사항 고려)</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활동에 연관된 학생선수의 수</li><li>- 학생선수의 나이, 성숙도, 경험</li><li>- 아이들의 학습정도, 장애여부, 특이사항 숙지</li><li>- 운동종목에 따른 위험한 활동 및 환경의 고려</li><li>- 지도자의 경험과 자질수준</li><li>- 신체적 접촉</li><li>- 응급처치 및 상해치료</li><li>- 도전적인 행동 관리</li><li>- 학생선수 수송</li><li>- 스포츠대회참가를 위한 여행 시 학생선수보호 담당관을 동참, 위험요소 평가, 여행자 보험, 학생선수 10명 당 최소 2명 이상 담당관동행, 숙박, 출발 전 부모와 사전회의 및 양식 작성</li></ul>

### 3. 한국의 시행노력

스포츠폭력을 예방하고 사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산하조직으로 스포츠인권익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스포츠인권익센터 홈페이지<sup>4)</sup>를 보면 여러 가지 스포츠인권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선수(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법”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찾아가는 스포츠인권상담실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0건의 신청이 있을 뿐이었다.<sup>5)</sup>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시행한 교육프로그램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5월 현재까지 104개의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sup>

4) (<http://sports-in.sports.or.kr/servlets/rights/front/eduCenter/action/EduCenter06>)

5) 번호 제목 신청인 등록일 조회수 진행현황 (2012년 5월 20일 현재)

29 폭력예방교육 및 학습권 보장 최한민 2012.05.07 18 교육실시

28 학생 인권교육 실시 필요. \*\*\*\* 2012.04.27 17 교육실시

27 학생선수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 2012.04.26 17 교육실시

26 찾아가는인권교육 송진영 2012.03.20 17 교육실시

25 학생선수 폭력예방 교육 이철규 2012.03.06 21 교육실시

24 축구부 학생선수 인권교육 \*\*\*\* 2011.12.08 5 교육실시

23 학교운동부원들의 폭력상담 이해와 또는 성폭력에 관한 지식 상담 권혜숙 2011.11.21

29 교육실시

22 체육고등학교 스포츠 인권교육 임현진 2011.10.27 35 교육실시

21 대명중학교 유도부입니다. 김명균 2011.07.18 44 교육실시

20 지도자, 선수의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 2011.07.12 14 교육실시

6) 현재 교육 수 : 104(2012년 5월 20일 현재)

(<http://sports-in.sports.or.kr/servlets/rights/front/eduCenter/action/EduCenter?command=03&listcount=10&orderby=&direction=&curpage=1>)

교육프로그램	지역	일시	장소	참가인원
경기단체별 교육	충남	2012/04/13	충청남도 논산문화예술회관	130
시도별 연합교육	강원	2012/03/29	강원도 춘천체육고등학교	325
시도별 연합교육	경북	2012/03/22	경주교육문화회관 (거문고 C홀)	140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상담실	서울	2012/03/20	동북중학교 영어회화실	40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상담실	경기	2012/03/19	경기체육고등학교 도서실	40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상담실	서울	2012/03/24	서울특별시체육회 1층 대회의실	60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상담실	전북	2012/02/04	전주비전대학교	250
경기단체별 교육	전북	2012/03/17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54
경기단체별 교육	강원	2012/02/23	옹평리조트	160
경기단체별 교육	서울	2012/02/16	한국체육대학교. SK 핸드볼경기장	34

#### 중략

시도별 연합교육	인천	2009/07/20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	----	------------	------------	--

스포츠인권익센터는 2005년에 “선수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선수폭력 실태조사, 선수폭력근절 및 예방대책, 선수육성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a. 선수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 b. 선수권익보호를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및 교재개발(2006. 체육과학연구원),
- c.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드스 제작 배포('09.12)
- d. 선수등록 시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드스 확인 후 입력 가능토록 등록시스템 개선
- e. 폭력근절교육 연간 4,000여명을 대상을 실시

#### 4. 예방책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스포츠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일 것이다. 피해선수들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주종미, 2008: 237).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숨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의 경우 2010년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06년 1건, 2007년 0건, 2008년 2건, 2009년 3건, 2010년 2건이다. 그러나 성폭력 신고건수는 2006년 1건 2007년 0건, 2008년 2건, 2009년 8건, 2010년 75건 이다. 즉, 2010년에 신고상담된 운동선수 성폭력사건은 75건인데 징계가 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성폭력이 1년에 0~8건 정도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수치이긴 마찬가지이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은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다. 학교 운동선수의 구타에서 자주 발생하는 몽둥이 등 기구를 이용한 폭력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는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또한 가중처벌이 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스포츠계는 특수영역으로 인정하여 폭행을 당연시하고, 처벌도 경미한 것이 현실이다. 법의 실효성을 이야기 할 때, 강제력을 거론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아무리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법을 지키겠는가.

## 5. 스포츠폭력 대처방안으로서 법·인권교육의 방향

현재의 법교육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단 악법도 지키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권교육은 질서유지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어야만 한다. 현재 악법도 법이라는 이상한 도그마에 빠져 있는 현실이 스포츠계에서의 폭력질서를 법으로 여기고, 계속되는 폭력을 감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법교육에는 반드시 인권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법·인권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관련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타인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바뀌어야만 한다. 어떤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와 함께 타인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법·인권의식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

## V. 결론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은 조직특성상 공공연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발생한다. 일반폭력은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이루어지고, 성폭력의 경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공공연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은 지도자와 제자, 선생과 학생, 선배와 후배, 동료와 동료 사이의 복잡한 위계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 체육특기생이 되는 방법은 결국 지옥 같은 훈련과 운동지도자에 대한 복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했던 로마시대의 검투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으로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공부를 포함한 일반세계와 격리되어야만 한다(박순오, 2010: 15). 이러한 구조 속에서 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스포츠계의 특수한 구조를 일반사회의 일반 구조에 공개하고 함께 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스포츠계의 폐쇄성이 유지되는 한 폭력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사회의 시선이 늘 스포츠 폭력을 감시하는 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한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스포츠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며, 사회와 격리된 특수조직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교육은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a.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b. 학생선수 인권교육 및 성교육 지속적 실시
- c. 지도자 인권교육, 지도자 인사검증제도 정착
- d.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 인권교육 및 간담회 실시
- e.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초·중고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사실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엘리트스포츠 위주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스포츠계의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만 한다.

첫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최근의 학생선수 인권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 평가하여, 엘리트스포츠 중심에서 생활스포츠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둘째로, 학교체육도 더 이상 대학진학의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입시정책처럼, 운동부를 대학입시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한 학교체육에서 폭력이 사라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결론은 현재의 스포츠계에서는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해야만 한다. 우리는 스포츠강국 중국을 결코 선진국이라 말하지 않는다.

### [참고 문헌]

- 강신욱(2007).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언어폭력 경험과 자율훈련참가의 가설적 인과모형분석”. 한국체육학회(편)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6호.
- 국가인권위원회(2007).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결정문
- 류태호 외(2003). “학교체육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순오(2010). 태권도선수의 인권보호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2005). “선수에 대한 폭력행위 실태 및 근절대책”. 대한체육회.
- 연기영·정승재 외(2009). 스포츠와 법. 형설출판사.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정승재(2004).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희준(2007). “여성을 위협하는 체육계의 구조적폭력과 그 익숙한 관행, 그리고 대안”. 한국여성민우회 문화연대 공동주최 <스포츠 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 토론회 자료집.
- 주종미(2008). “운동부 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편),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3호.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sports.or.kr/>

스포츠인 권익센터 홈페이지: <http://sports-in.sports.or.kr/>

•• 주제 발표 3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학교규칙**





[주제 발표 3]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학교규칙

이 대 성(고양 백신고 교사)

- I. 시작하며
  - II. 학교폭력의 양상과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 III.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 IV. 학교규칙과 학교폭력 근절의 문제
  - V. 맺으며
- \* 참고문헌

### I. 시작하며

지난 해 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4차 국가보고서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우선적으로 독려하고,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 개발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전에도 학교폭력은 있어 왔지만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중학생 사이 또는 대상의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지속된다는 점,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괴롭힘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며 그 심각성도 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과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1,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야심차게 노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sup>1)</sup> 최근에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금품갈취 이외에도 집단 따돌림,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졸업빵, 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폭력 유형도 등장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이대성, 2011: 26).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이라도 한 듯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크게 다루고 있고,<sup>2)</sup> 교육 공동체나 유관 기관 역시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월 6일에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다.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직접 대책과 근본 대책을 발표하였다.<sup>3)</sup> 이에 대해 여러 학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내놓은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 대응책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학교와 가정에 전가한 채 근본적인 현상(예를 들어,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국영수 중심의 입시 정책)에 대한 시정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정책 추진의 실효성(예를 들어,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에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있다(엄명용, 2012: 51; 허종렬, 2012).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책을 학교현장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는 점과 교사-학생-학부모의 모종의 역할 변화를 피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

1) 최근 5년간(2006-2010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06년 3,980건, 2007년 8,444건, 2008년 8,813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5,605건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다시 초·중·고 학교폭력 건수는 7,823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39.6% 증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1-2);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 9,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1년에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학생이 조사대상자의 18.3%(약 1,678명)로서 2010년의 11.8%에 비해 55.1% 포인트 증가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도 2011년에는 조사대상자의 15.7%(약 1,440명)으로서 2010년의 11.4%에 비해 37.7% 포인트 증가했다.

2)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 모두 20여개의 쟁점에 대해서 사실 100여개를 포함하여 3,500여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허종렬, 2012: 18).

3) 직접 대책으로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를, 근본대책으로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고는 있는데 방향성이 결여되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것을 본 연구자는 학교폭력종합근절대책의 정책 입안 과정에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분석하였다. 다른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종합대책의 경우에도 교육 전문가나 관련 학자, 행정 관료 등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단기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다 보니 학교 현장 실천과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최근 학교폭력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지는 학교현장의 몇 가지 모습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4)</sup>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선 학교규칙의 검토도 필요하다. 학교규칙이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뜻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공유할 때 그 의미가 더해진다.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있어 중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12). 학교폭력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않은 태도이며 그러한 이유에는 학교폭력문제와 관련된 각종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 준수 의지와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폭력문제는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분쟁과 갈등이 발단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예를 들어, 학생자치법정, 또래조정상담 등)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학교폭력문제 역시 학생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 간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

4) 각 학교마다 수많은 학교폭력 관련 교육청 공문에 시달리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매 학년 초마다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학생부장이나 담임교사를 기피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놓고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와 정부 상호 간에 의견을 같이 모으기도 하지만 서로 주장이 달라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제대로 신경을 써 주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교사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의 능력과 방법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만 과잉보호하고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렵다. 교직원들은 한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무너져 더욱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교사들이 교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체벌 등을 정당화하는 풍토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무지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있다. 학교폭력 등 학생 사안과 관련하여 예년보다 경찰서의 학교 협조 요청의 빈도가 많아지고 교사의 직무 유기를 둘러싼 강경한 입장은 학교현장을 위축시키는 분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게 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을 탐색하고, 학교규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문제를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규칙 운영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폭력 양상과 특징을 살펴 보면서 학교 구성원 즉 교사, 학생, 학부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후 학교폭력의 문제를 사전 예방, 사건 발생, 사후 조치 등의 단계별로 학교 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각 단계별로 학교 구성원들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올바른 역할 수행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끝으로 학교규칙과 학교폭력문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의미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구성원 대상의 연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방향성있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사고와 관련된 교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 II. 학교폭력의 양상과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 1.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sup>5)</sup> 최근에는 주먹이 오고가지 않는 비폭력 유

5)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

형들까지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빵셔틀이나 와이파이 셔틀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인터넷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놀리는 행동이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고 망가뜨리는 행위, 강제로 답안지를 보여 달라는 행위 등도 모두 학교폭력이다(이대성, 2010).

이러한 학교폭력 개념은 발생 장소, 학교폭력의 주체(가해자와 피해자), 폭력행위 유형 등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개념 정의도 가능하다. 발생 장소에 따라 학교를 벗어나 학교 주변과 등·하교길, 사이버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것까지도 확대 가능하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학생의 교사나 교직원에 대한 폭력도 포함될 수 있으나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이나 성인들에 의해서 당하는 폭력은 학교폭력에서 제외된다는 문제도 있다.<sup>6)</sup>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학교 주변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생에 대한 폭력이나 금품갈취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이수연, 2007).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 단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보더라도 학교폭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김준호, 2012: 43). 비교적 사소한 폭력을 제외하느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현장의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나름대로 표준화된 학교폭력 개념 정의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보화 매체 발달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24시간 괴롭힘을 당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안티카페 개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협박, 신상정보 노출, 허위사실 유포 등

---

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6)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에 대한 폭력도 학교폭력의 중요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이를 거의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다.(김두현, 2002: 21-31). 하지만 한국교총이 발표한 “2009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 총 237건 중에서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이 108건(45.6%)로 절반에 육박한다고 볼 때 이를 재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한국교총, 2010).

의 행위를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있다.<sup>7)</sup>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집단으로 한 명을 왕따시키거나 괴롭히는 형태의 사이버불링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sup>8)</sup>

이와 같은 현상은 종전과는 달리 학교폭력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로 인해 피해학생의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 2. 학교폭력의 실태와 특징

### 가. 학교폭력의 실태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초·중·고생 9,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몇 가지 의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율은 18.3%로, 2010년 11.8%에 비해 55%나 늘었다. 가해율도 2010년 11.4%에서 지난해 15.7%로 38% 증가했다. 폭력 피해 학생 가운데 자살 충동을 느낀 비율은 2010년 30.8%에서 지난해 31.4%로 늘어, 피해 학생의 고통 정도도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했다. '뺑 서툰'이 학교폭력이란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이 46%나 됐다. 또한 학생들 중 35.7%는 졸업뺑을, 34.9%는 홈페이지를 통해 욕설을 하는 것을 학교폭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경우 가해학생은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폭력을 휘두

7) 이른바 '사이버 불링'이라 부르는데 그 구체적 사례를 보면 예컨대, 가해학생이 비밀그룹을 페이스북에 만들고 뜻을 같이하는 가해학생들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가득 채우고 이 글들을 학급 친구들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혹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여러 학생이 한 명에게 욕을 퍼붓는 이른바 '떼카'의 경우도 있다.

8)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다섯 명 중 한 명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욕설과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따돌림 피해자를 괴롭히는 안티카페도 1000여 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경찰청은 최근 SNS 및 인터넷사이트 등을 1300여 차례 모니터링하여 폭력적 졸업뒤풀이 관련 동영상 18건과 흡연과 욕설 등 청소년 비행동영상 5건 등 동영상 23건,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대전지역 왕따카페 등 36개 청소년 유해카페를 적발, 삭제한 바 있다(정완, 2012).

르게 된다. 심해지는 가해학생 시선의 ‘장난’이 피해학생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피해 연령도 낮아지고 있었다. 처음 폭력을 당한 시기는 ‘초등 1-3학년’이 2010년 17%에서 지난해 26.5%로, ‘초등 4-6학년’이 같은 기간 35.9%에서 46.2%로 늘어났다.

넷째, 학교폭력이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경향도 짙어졌다. 피해 학생한테 ‘몇 명에게 가해를 당했는지’ 물어보니, ‘2명 이상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이 67.9%에 이르러, 전년(66.2%)보다 늘었다.

다섯째, 이처럼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처나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 가운데 폭력을 당한 뒤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우는 응답자의 37.2%였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17%나 됐다.

여섯째,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가 증가하고 있었다. 학생 중 32.8%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2008년 28.6%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일곱째, 학교폭력을 목격한 86.7%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은 사유는 보복을 우려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라고 들었다.

## 나. 학교폭력사고의 특징

학교폭력사고는 일반적인 학교사고와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대성, 2012).

우선 학교폭력사고는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최근 사이버 상의 비폭력적인 범주들까지 학교폭력에 포함되면서 학교폭력사고를 둘러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학교폭력사고는 어느 상황에서나 발생할 개연성이 늘 잠복해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부족하고 학교에는 혈기 왕성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다. 교과시간이나 휴식시간 등 교사가 입장하거나 입장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학교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한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폭력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셋째, 학교폭력사고는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 감독상의 차이가 있다(황홍규, 2001: 197-226). 초등학생의 경우 인지적인 면에서 아직 미숙하여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중·고등학생은 발달과 정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의 속도가 빠른 시기이고 혈기왕성하며, 자기 가치 표현이나 주장이 강한 시기로 친구들 간의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빈도가 높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넷째, 법률행위 무능력자이거나 책임무능력자가 학교폭력 사고의 당사자라는 점 때문에 학교폭력사고의 책임을 이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 책임이 있는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부담지우게 하고 있다.

끝으로 여전히 학교폭력문제를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윤리적 관계에 기초하려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좀처럼 법적 책임관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 3.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 구성원의 관계

#### 가. 학교폭력과 학생의 관계

학교폭력은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들 간에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피해학생은 어떻게 피해를 입었고, 가해학생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주체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와 학생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학생 즉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 이유도 “짜려봐서, 기분 나빠서, 그냥...” 등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학교폭력 양상이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해학생이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고, 여학생 간의 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학교폭력 사안이 많아

지고 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학교폭력의 개념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이 부족하다.

넷째, 학교폭력의 방관자가 많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최초 신고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큰 사건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나 주변 친구들이 신고를 하면 다른 친구를 고자질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또한 신고해봤자 일이 더 커지고, 보복을 당한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다섯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교차된다는 점이다(김준호, 2012: 23-24). 처음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고통을 당했던 학생이 이후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자신보다 왜소하고 나약한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쾌감을 느끼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가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결손 가정이거나 부모-자녀 간의 대화 단절 현상 및 심리적 불안 등을 보이고 있고, 피해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자녀 간의 대화 단절이나 소외감 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문제가 학교폭력의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일곱째, 남에 대해 배려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소자녀관에 따른 부모의 과잉보호, 개인주의 경향이 확산되면서 남을 위해 배려하거나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학교폭력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자신도 피해자라고 여기는 경우도 종종 발견한다.

여덟째, 학교규칙에 대한 이해도와 준수 의지가 부족하다. 학교규칙을 잘 모르고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관심을 가질 뿐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생각이 없다는 인식도 있다.

아홉째, 분노 조절이나 스트레스를 마땅히 풀만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은 분노 조절이나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이나 교육이 부족했다. 학교생활 하면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직접 해결해 나가기보다

는 부모님이나 학교 교사들에 의해서 주로 처리되다보니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이나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일을 더 키워서 학교폭력문제로 확대시키는 경우도 보인다.

## 나. 학교폭력과 교사의 관계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지만 1차적으로 교사들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존재한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며,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 간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 상호 간에 분쟁과 갈등이 매번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학교 교사와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학생 간의 분쟁 상황을 교사들이 어떠한 파악하고 대처하는 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 문제와 교사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학교폭력문제는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몫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선 전교사가 노력해야 하지만 학교현장은 어느 순간부터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학교폭력 문제는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몫이 되고 말았다.

둘째, 교사들의 적법절차 인식이 부족하다.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하여 학생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담당교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교육의 논리에 따라 해결하려 한다. 이러다보면 사건이 쉽게 처리되기 보다는 더욱 더 확대되는 경향이 크다.

셋째, 교사들 역시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 지식이 부족하다.

넷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족하다. 1차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이 처리하려고 하고,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러다보니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더욱 키우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하는 일부 교사를 제외하고는 학교폭력문제 처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연수 실적도 부족하다.

여섯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전 파악이 잘 안된다는 점이다.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학생들을 알고 있지만 정작 담임교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상담 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곱째,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학년별 연계지도가 어렵다. 가해 및 피해학생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고, 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다보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피해 및 가해학생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입학생과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가장 학교폭력 빈도가 높은 편인데, 이들에 대한 어떠한 사전 기록도 알수가 없는 현실이다.

여덟째,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교육이 진행된다보니 교육의 효과성이 부족했다. 이러한 이유는 제대로 된 교육자료나 준비 상태가 부족한 경우이며,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주로 조종레시간에 집중되다보니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교육적 처벌 수단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주로 봉사활동 중심으로 진행된다보니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교육을 진행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성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 다. 학교폭력과 학부모의 관계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이며 친권자로서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교양의무를 지닌다. 만일 학교폭력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자녀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 곳에서든 시간에 학교폭력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그 부모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근본적으로 가정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학교폭력 문제와 학부모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학부모 역시 학교폭력 개념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이 개념과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부모 대상 교육이 필

요하다.

둘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단절과 괴리가 학교폭력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에서 대화의 복원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고통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으며, 힘들어하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 내의 불화나 폭력은 없어야 한다. 가정폭력의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또한 부모의 성격이 그대로 자녀의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과 태도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넷째, 자기 자녀만을 과잉보호하거나 감싸려는 태도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더욱 힘들게 한다.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자기 자녀만을 편들고 감싸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방패막이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허왕된 꿈을 갖게 된다.

다섯째, 밥상머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이 실종되었다. 예전의 밥상머리 앞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양한 인성교육이나 교훈 등을 들려주면서 깨달음을 주었다면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단절 등으로 밥상머리 교육은 실종되었다. 이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실질적인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학교폭력 문제 등과 같은 학생 사안의 경우 학교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학생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를 불신하여 학교에 알리기보다 경찰이나 교육청 등에 먼저 알려서 해결하려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일곱째, 자녀의 분노 조절이나 정신적인 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자녀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과감하게 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지속적인 상담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여덟째, 남을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과 실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교육과 함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사를 불신하는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 교사와 학부모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상호 간의 협력해야 한다.

### Ⅲ.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 1. 학교폭력의 진행 과정과 학교 구성원의 역할

##### 가. 학교폭력의 진행 과정

학교폭력을 크게 사건 발생 전단계, 사건 발생 단계, 사건 발생 후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학교폭력 단계별 주요 내용

단계	주요 내용
사건발생 전단계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사전 징후 포착(상담 및 관찰활동)
사건발생 단계	학교폭력 발생, 사건 조사 및 관련 학생과 학부모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분쟁 사항 심의 및 조정(가해학생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
사건발생 후단계	가해학생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 조치 확인, 관련 학생 추수 상담지도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

##### (1) 사건발생 전단계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폭력관련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대상 예방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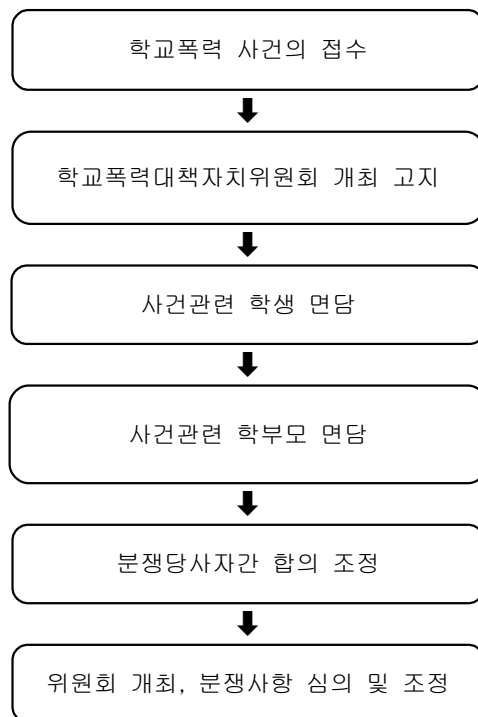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의 경험이 있고 분노 조절 및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해선 사전 상담 및 관찰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담임교사와 진로상담교사, 학생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함께 가정-학교 간의 연계지도도 이루어져야 한다.

##### (2) 사건발생 단계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의 자체적인 사고 조사와 별도로 수

78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 교육적 접근

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 각각 수사기관의 처분, 학교장의 징계 처분 등이 이루어지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김현철, 2010).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자치위원회가 소집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기까지의 상세한 과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이명우 외, 2005).

(가) 중재활동의 접수

- 학생폭력신고에 의한 자치위 중재활동의 접수: 학교폭력이 발생한 뒤 이를 목격한 학생의 신고가 있을 경우, 책임교사는 이를 ‘학교폭력 신고접

수 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학교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책임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사안의 사실여부와 발생경위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통해 확인한다. 사안의 내용이 사실이고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때, 책임교사는 학부모에게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에 의한 자치위원회 중재활동의 접수: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위해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였을 때, 책임교사는 우선 학부모에게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안의 발생 경위를 자세하게 들은 뒤 이를 정리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책임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사안의 사실여부와 발생경위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통해 확인한다.

#### (나) 자치위원회 개최 고지

조사내용이 사실일 경우 학교장은 신고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책임교사를 통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한다. 책임교사는 자치위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 일자와 관련 안전에 대해 전화로 간략하게 보고한 뒤, 좀 더 상세한 사안 관련정보를 이메일과 서면을 통하여 고지한다. 사안 확인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을 중지한다.

#### (다) 사건 관련 학생 면담

전문상담교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을 차례로 면담하여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어지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탐색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과정에서 중재방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라) 사건 관련 학부모 면담

전문상담교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따로 만나 현 중재상황에 대한 불안하고 화난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운 뒤, 이 중재상황이 어떻게 처리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상담교사는 따뜻하되 중립적인 자세로 양쪽 학부모의 얘기를 잘 경청하여 중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다. 이와 더불어 전문상담교사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지침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현 상황을 보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이외에서 필요한 여러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을 소개하여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분쟁당사자간의 합의

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관련 학생과 학부모가 모여 합의를 모색해 보는 과정이다.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책임교사는 아래의 갈등해결의 원칙을 먼저 제시하여 대화가 감정싸움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책임교사는 분쟁당사자들에게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의 바라는 점을 얘기하여 충분한 시간을 준 뒤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분쟁당사자간에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이를 자치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 절차를 밟도록 한다.

(바) 자치위원회 개최/분쟁사항 심의

분쟁당사자의 합의과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진술을 들은 후 이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심의된 중재안(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을 확정지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심의된 중재안(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sup>9)</sup>을 확정지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사건발생 후단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조치가 내려진다. 최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면서 피해에 따른 상담과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해학생에 대해선 관련 교육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 참고.

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추수 지도와 관리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 나. 학교폭력 단계별 학교 구성원 역할

과연 학교폭력 단계별로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크게 사건 발생 전단계, 사건 발생 단계, 사건 발생 후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사건발생 전단계에서는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학교폭력 사전 징후를 포착하여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구성원들은 학교폭력 개념과 관련 법령, 처리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요선도학생 파악 및 지속적인 상담 및 관찰 지도가 중요하다. 특히 교사들은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 역시 가정에서 학생들과 원만히 대화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요령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

사건발생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을 인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 요령 지도가 필요하며, 교사들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학교장이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책임교사에 의해 학교폭력 사안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한 사건 조사를 토대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 과정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재심 청구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재를 득하고 처분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지해야 한다.

사건발생 후단계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분 조치 시행 및 확인의 과정이 필요하며 관련 학생들의 추수 상담활동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교사들은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및 예방교육활동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체 상담 및 심리적 치료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학부모 역시 학생 상담 및 치료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교사와의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되었던 학교 구성원의 역할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학교폭력 단계별 학교 구성원의 역할

단계	주요 내용	학교 구성원의 역할
사건발생 전단계	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사] 학교폭력 개념과 처리 과정에 대한 전문적 이해, 지속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학생] 학교폭력 개념과 관련 법령 내용 이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갖기 [학부모] 학교폭력 개념과 관련 법령 내용 이해, 지속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관찰 및 상담요령 교육
	학교폭력 사전 징후 포착(상담 및 관찰활동)	[교사] 요선도학생 파악, 교우관계도 및 상담을 통한 사전 파악, 지속적인 상담과 활동, 이상 징후 파악 요령 교육 [학생] 교사 및 학부모와 의사소통 개선 노력,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힘든 일은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기 실천 [학부모] 학생과 가정에서 상담, 지속적인 관찰 활동, 담임교사와 지속적인 연계 관찰 및 상담, 이상 징후 파악 요령 교육
사건발생 단계	학교폭력 발생	[교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격리, 학생과 학부모 상담, 전담기구를 통한 처리방향 논의 [학생] 신속한 신고, 심리적 안정 및 치료, 피해와 가해 격리(접촉 금지), 사건 확산 방지, 증거 자료 보관 유지 [학부모] 신속한 신고, 피해학생 안정과 치료, 교사와 연락 유지, 관련 자료 보관 유지
	사건 조사 및 관련 학생과 학부모 면담	[교사] 사건 조사, 관련 학생 면담, 학부모 면담, 학생과 학부모에게 처리과정 설명 [학생] 진술서 작성, 사건 내용 파악, 교사와 면담 [학부모] 사건 내용 파악, 교사와 면담

	<p>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p>	<p>[교사] 자치위원회 사전 연락 및 진행 책임, 자치위원 참석 확인, 학생과 학부모 발언기회 보장, 사안 처리 내용 보안유지                  [학생] 자치위원회 참석, 충분한 자기 의견 소명과 진술 내용 확인, 자신의 입장 표명                  [학부모] 자치위원회 참석, 충분한 자기 의견 소명과 진술 내용 확인, 자신의 입장과 처분 내용 표명</p>
	<p>분쟁 사항 심의 및 조정(가해학생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p>	<p>[교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처분조치, 처분 판단 근거 설명, 재심청구 절차 안내, 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결재, 처분결과 통보                  [학생] 자치위원회 처분 내용 확인, 재심 청구 여부 판단                  [학부모] 자치위원회 처분 내용 확인, 재심 청구 여부 판단</p>
<p>사건발생 후단계</p>	<p>가해학생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 조치 시행 및 확인</p>	<p>[교사] 피해학생 보호 조치 확인, 가해학생 처분 조치 확인, 피해 및 가해학생 처분 상황 지속적 확인, 가정과 연계 지도                  [학생] 위원회 조치 사항 확인 및 시행,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요구                  [학부모] 위원회 조치 사항 확인 및 학생 협조,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요구</p>
	<p>관련 학생 추수 상담지도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p>	<p>[교사] 관련 학생 추수 상담 지도, 관찰 및 상담 활동, 예방교육프로그램시행                  [학생] 자기 반성과 예방노력, 상담활동 및 교육활동 참여, 심리적 상담 및 치료 병행                  [학부모] 학생 상담활동 및 치료 활동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전개</p>

## 2.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학교와 교사들이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관계 당사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의 설치·경영자 등이 될 수 있고, 학생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이들이 부담하는 책임은 어떤 법률적 근거에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살펴보자(이대성, 2012).

### 가. 학생의 책임

폭행이나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등의 행동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가해학생은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징계책임을 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해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에 있어서 그 책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관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므로 피해자쪽에서는 가해학생의 부모나 학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가해학생의 형사법적 책임

우선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略取)·유인죄, 명예훼손죄·모욕죄 및 공갈(恐嚇)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지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된다. 사건에 따라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2명 이상 집단 폭행으로 상처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10)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

---

10) 제2조(폭력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협박), 제276조제1항(체포,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이재상, 2011).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소년사건이란 소년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 및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비행사건을 말한다. 소년법은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오석규, 2009: 44-45). 소년보호사건은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년법에서 정한 특별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소년사건으로서 가능한 처벌을 피하고 소년법 제1조에 규정된 대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소년형사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과할 목적으로 전개되는 소년사건으로서 범죄소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소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사에게 송치한 후 공소 제기됨으로써 형사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다.

최근 소년사건에 청소년 참여법정이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참여법정이란 초범이거나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건의하고, 판사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며, 소년이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재비행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의 조치 없이 심리 불개시결정을 하여 사건을 그대로 종결 처리하는 제도이다(정순원, 2011: 110). 이 제도는 미국 청소년 법정을 우리나라 법원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청소년 참여법정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서울가정법원과 의

- 
-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부법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를 준비 중에 있다.

### (2) 가해학생의 민사법적 책임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 이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의하여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소년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10세 미만인자는 보호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미성년자의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13세-14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김형배, 2011). 그러나 책임능력을 인정할만한 나이가 되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는 경제적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부모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 즉 부모 등 친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가해학생의 징계책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 시행 이전에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사안을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다루었다.<sup>11)</sup> 그러나 2004년 7월 30일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었다.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임의기구가 아니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학교폭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11) 학생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그 법적 지위와 구성원, 그리고 기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선도위원회는 당해학교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등 학교의 교원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자치위원회는 그 위원이 당해학교 교감을 포함하여 학교폭력담당교사와 학부모 및 관련 공무원(경찰, 검찰, 법조인 등), 청소년보호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있다.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그 권한과 책임이 자치위원회에 있으며,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학교폭력에 관계된 모든 사항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치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징계책임을 져야 한다. 징계책임을 가해학생측과 피해학생측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졌을지라도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육적 차원의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 나. 학부모의 책임

학교폭력을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의 책임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직접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민사책임에 있어서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sup>12)</sup>는 실제적인 손해배상 능력 즉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정의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753조에서는 가해자의 부모는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녀의 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의 부모의 책임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할 수 있으나, 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교양할 의무는 포괄적·윤리적 의무이기 때문에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로서 부모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3)</sup> 가해

12) 2011년 2월 18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만 20세로 규정하던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변경되었다.(민법 제4조)

1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가 친권자로서 일반적인 지도·교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자녀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때에는 지도·교양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 곳에서든지 간에 학교폭력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그 부모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 다. 교원의 책임

학교폭력사고가 발생하면 교원의 책임은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3가지 관점에서 책임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1) 형사 책임: 직무유기죄

학교사고와 관련해서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 체벌의 사례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sup>15)</sup>

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에 관한 범죄이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추상적인 충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서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 입건하지 않고 목살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과세자료가 은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치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직무유기죄이다.<sup>16)</sup>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여야 하며 직무의 내용은 성문으로 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 또는 명령이 있는 구체적인 직무여야 한다(손영배, 2012: 7-8).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1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15) 한국일보, “교사, 학교폭력 대처 직무유기… 법적 잣대 애매”(2012.02.08); 세계일보, “학교폭력 방관한 교사 직무유기죄?”(2012.02.07) 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과 교사의 직무유기죄 처벌 관련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

16)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75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않은 경우나 직무집행의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sup>17)</sup>

학교폭력을 방치한 교사의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교사가 유기하거나 방치한 직무의 범위가 먼저 문제된다. 직무 유기죄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의미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부수적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직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직무 유기죄에서의 직무는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그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직무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해당하며, 직무상 실수 혹은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

교사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책무가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하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법에서 말하는 직무 유기죄는 학교폭력사고에 까지 처벌하려는 근본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2) 민사법적 책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5조에 의하면 책임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하는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교사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한 대리감독자의 책임은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지는 책임보다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요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법원도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 학교 운영이나 교직 수행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 때

17) 대법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인정하였다.  
 1. 부대물품출납관이 물품불출청구 후 즉시 불출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약사감시원이 무허가약국개설절차를 조사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수사관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69. 2. 4. 선고 67도184 판결), 3.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 중에 호송교도관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제소자들이 집단으로 탈주한 경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6 판결) 등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법원은 이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교육활동과의 밀접한 관련성,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과 사고예방의 기대가능성 등이 존재할 때에만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학교 내의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보호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sup>18)</sup>이 있다.

### (3) 행정법적 책임: 징계 책임

행정법상의 징계 책임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공무원 관계의 내부에 과해지는 법적 제재를 의미한다.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가하는 처벌이다. 교사의 징계 사유는 헌법을 비롯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기타의 법을 위반한 경우,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제65조<sup>19)</sup>에 규정된 교사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직무태만의 경우, 직무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징계의 종류는 법률에 따라 상이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감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가지가 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관계의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감등, 정직, 감봉, 견책은 교정징계라고 할 수 있다. 교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정찬기, 1998: 43).

또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에게 자성하라는 의미로 신분상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내리는 행정처분이 있다. 학교 교사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으로는 경고, 주의 및 경위서 제출 등이 있다. 학교폭

18)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19) 제55조(선서),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0조(미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2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력사건과 관련하여 교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경미한 폭력사건으로 판단해 즉각적이고 적법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sup>21)</sup>

###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

위 절에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의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학교폭력 사고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사안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방관자들로 인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되고, 이러한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치 위원회 역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하며, 법적 처벌과 함께 교육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가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학교폭력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추수 지도와 상담 치료 활동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

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교장, 처리 담당교사, 담임교사로 나누어서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학교장의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하

20) 실제 올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교육청에 은폐, 축소 보고한 중학교 학교장과 교사, 업무처리가 부적절한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직원 등 9명이 무더기 징계 조치를 받았다.(인천신문, 2012년 2월 20일자)

21)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영제4조 제2항 제7호 신설),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파면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95호)

고 법령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처리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는 무엇보다도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처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교사가 생활지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모두 알아야 하고,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개편과 직무연수프로그램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적법절차 원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처리 담당교사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 상담이나 자치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보장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철저한 상담과 관찰활동을 통해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예방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활동과 가정과의 연계지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담임교사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변화와 특이사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선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노력, 학습 자료 개발과 지원, 관련 유관기관의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기관 증설 노력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 나. 학생의 바람직한 역할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왜 처벌받아야 할 나쁜 행동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프로그램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 중심의 일제식 수업보다는 다양한 게임이나 활동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 방법 구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는 행위는 결코 나쁜 고자질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는 행위는 의무사항이며 피해 친구를 구제해 주는 권리 구제활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피해 당사자 역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사나 학부모, 동료 친구 및 관련 기관 등에 신고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학교생활을 해 나가면서 학생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고, 자신감을 갖고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 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고,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자신감있는 활동을 갖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나보다 힘이 약하고 약자인 친구들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과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에게도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조종레시간과 교과활동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약자 배려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다. 학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학부모 역시 학교폭력 사전 징후를 잘 파악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어떠한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지에 대한 법적 소양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를 믿고 알려져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 알리면 일이 커지고 아이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1차적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 알려져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자식만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접근해서는 안된다. 우리 아이의 잘못도 일부분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도 상담과 치료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아이를 순간적으로 두둔하게 되면 아이는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더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학교와 가정의 연계가 중요하다. 학교에만 무조건 맡겨서도 안된다. 관련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와 상담 관찰을 위해선 가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정의 학부모가 있어야 한다. 실제 상당수의 학생사안 관련 학생들은 가정 문제에서 비롯되며 학부모의 변화된 모습과 노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IV. 학교규칙과 학교폭력 근절의 문제

### 1. 학교규칙의 성격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9-12). 무엇보다도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두발, 복장 등과 관련한 학생생활문제들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학교규칙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준수 태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학생 스스로 학생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 2. 학교규칙과 학교폭력문제의 관련성

학교폭력문제는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 간의 분쟁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을 원만히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친구들과의 사소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노력이 곧 학교폭력예방이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두발이나 복장 등 학교생활규정 문제를 둘러싸고 교사들과 첨예한 대립 양상보이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 문제를 학생들이 참여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간다면 학교폭력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이밖에도 학교폭력해결책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학생, 교사, 학부모가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학교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만큼 훌륭한 인성교육은 없다.

지난 2월에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종합대책 중에서도 학교규칙과 학교폭력문제해결의 관련성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

우선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이다. 모든 학교가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학생 또래활동과 학생자치법정 등 자율활동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활동 참여 기록을 학생부 특기사항 및 에듀팟 등에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상당부분 학급 혹은 학교 단위의 규칙 제정 등과 그것을 준수하는 과정과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허중렬, 2012).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 ▶ 초 4학년 도덕 : 학급자치규약 만들기 ⇒ 중학교 도덕 : 학생생활규칙 만들기  
⇒ 고교 사회 : 학교규칙 만들기
- ▶ 초 5학년 도덕 : 또래상담훈련 ⇒ 초 6학년 도덕 : 또래중재훈련

둘째, 학생-학부모-교사의 학생생활규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대화와 토론 과정을 통한 정한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이 감소한 사례를 다음과 같다(허중렬, 2012).

**【우수사례 : 부산 연제중, 벌칙선택제(PNC) 운영으로 학교폭력 감소】**

- (내용) 벌칙 약속(Promise)-벌칙 예고(Notice)-벌칙 선택제(Choice) 3단계 과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생활규칙 준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함
- (성과) 무단결석일수 ('10)1,648일 → ('11)418일 / 학업중단학생수 ('10) 10명 → ('11)3명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10) 3건 → ('11)0건

무엇보다 관리자 중심의 학교문화가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가 중심이 되는 학교 문화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학교교칙은 하나의 문화다. 학교교칙을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학교에도 '소통의 문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통의 문화는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가져오고 웃음이 복원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 3. 학생자치법정 적용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자치법정의 적용이다. 학생자치법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허종렬 외, 2011: 116-120).

우선 학생자치법정은 학교폭력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사 중심의 처벌보다는 동료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비행 학생들의 선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6년에 새롭게 도입된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 법정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대폭 수정·고안하여 개발된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청소년 법정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두고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학생자치법정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효과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학생자치법정은 처벌 위주가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학생자치법정은 학교 문화의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문제이며 이들 간의 소통과 대화의 단절 또는 왜곡이 가져온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간의 단절되고 왜곡된 소통의 문화를 복원하는 계기를 학생자치법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동료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비행학생을 도와주어 올바르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소통의 문화 복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범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자치법정은 통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는 학교폭력 등의 학생 비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다양한 자치활동의 활성화는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이끌어냄으로써 학생들의 감정적인 불만이나 분쟁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불만과 분쟁의 감소는 곧 학교폭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소한 분쟁은 학생들 사이에 자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커진다.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간의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통해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학생자치법정

의 확대 보급을 통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학교 문화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면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학생자치법정의 전국적인 확대 보급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또래활동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생중심의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동료학생들 간의 활동을 통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대시켜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학생들 또래 상담활동과 자치법정 참여 등의 자율활동을 권장하고 이들의 참여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 특기사항이나 에듀팟 등에 기록해 줌으로써 대입 입학사정관제 등과 연계하여 운영도 가능하다.

다섯째, 학생자치법정을 적용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의 이해뿐만 아니라 준수 의지도 고양시킨다. 학생자치법정을 학생-학부모-교사의 학생생활규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과 연계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정한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에서 제정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생생활규칙에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권한과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함께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것은 규칙 준수 의지로 나타날 것이며 곧바로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섯째,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인성교육과 학생자치법정은 연계가 가능하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이 수립·시행되었음에도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하게 양산되고 이유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의 실천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성교육 보다는 즉각 학교폭력 현상을 억제하는 단기 대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였다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허종렬, 2012). 근본적인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법교육이야말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법교육과 관련된 자치법정 운영, 학급규칙 혹은 학생생활규정 만들기와 지키기, 학생상호간 인권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V. 맺으며

본 연구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발표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본 연구자는 정책입안 과정에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분석하였다. 최근 학교폭력문제를 둘러싸고 학교현장의 혼란 모습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진행 과정에서의 학교 구성원의 역할을 분석해 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탐색해 보았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학교규칙 개정에서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강조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교폭력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교사들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내실화와 사건의 은폐와 축소 금지,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처리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는 무엇보다도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처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 적법절차 원리에 대한 인식, 진행 과정에서 관련 학생과 학부모 상담이나 자치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보장과 인권 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철저한 상담과 관찰활동을 통해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예방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활동과 가정과의 연계지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의 경우,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죄행위라는 명확한 인식교육, 방관자가 아닌 사고 발생 시 신고하는 정신, 학교생활을 해 나가면서 학생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무엇보다 나보

다 힘이 약하고 약자인 친구들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인권교육이 시급하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폭력 사전 징후를 잘 파악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개념 인식과 처리 절차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를 믿고 알려서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자식만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접근해서는 안 되며 학교와 가정의 연계가 중요하다.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선 학교규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않은 태도이며 그러한 이유에는 학교폭력문제와 관련된 각종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 준수 의지와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분쟁과 갈등이 발단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예를 들어, 학생자치법정, 또래조정상담 등)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학교폭력문제 역시 학생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 간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문제를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규칙 운영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나름대로 학교폭력문제를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의 역할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대상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장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신장과 교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분석하기 보다는 개괄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다보니 여러 가지 한계는 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연구가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 구성원의 역할을 당위적인 수준에서만 제시하기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선 현장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교사들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교원

양성대학과 현직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 노력이 뒷따라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천적 노력이 과연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폭력예방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과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어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교폭력 심의 건수. 보도자료.  
\_\_\_\_\_ (2012a).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보도자료.  
\_\_\_\_\_ (2012b).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중등용. 교육과학기술부.
- 김두현(2002).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와 그 대책”,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국  
민대토론회 발표문.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준호(2012). “아동 안전 문제의 현상과 원인: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제3차  
아동복지포럼 자료집.
- 김현철(20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법률 개정  
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김형배(2011). “민법학 강의”. 신조사.
- 손영배(2012). “학교폭력의 현실과 교사의 법적 대처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 학교폭력세미나 자료집.
- 엄명용(2012). “한국의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한 효과적 예방과 협력적 접근방  
법: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제3차 아동복지포럼 자료집.
- 오석규(2009). “학교사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이대성(2010). “학교가기 두렵다, 도 넘은 학교폭력”. 매일경제(2010.03.10).  
\_\_\_\_\_ (2011).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의 방향. 법과인권  
교육연구, 4(1), 25-47.  
\_\_\_\_\_ (2012). “학교폭력사고 판례를 통해서 본 교사의 법적 책임”. 교육법  
학연구, 24(1).
- 이명우 외(2005). “경찰 다이버전 체제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모  
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수연(2007).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상(2011). “형법 총론”. 박영사.
- 정순원(2011). “학생자치법정 확대를 위한 제도화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4(3), 107-125.
- 정 완(2012). “사이버 불링, 누구의 책임인가”. 디지털타임즈(2012.05.16).
- 정찬기(1998). “교사의 직무상 고의·과실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전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2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 교육적 접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교총(2010). “2009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허종렬 외(2011). 학생자치법정 표준 모델 개발 연구.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자료집.

허종렬(2012).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검토와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대 양성과정 개편방안”,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 학교폭력세미나 자료집.

황홍규(2001). “학생사고와 학교·교원 등의 법적 책임”. 교육법학연구, 13, 197-22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88호)

•• 주제 발표 4 ••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과  
교원양성대학의 과제**





[주제 발표 4]

##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과 교원양성대학의 과제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법학 박사)

- I. 발제의 기본 입장과 목적
  - II.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검토
  - III. 정부 종합대책 및 교사 신규임용제도의 보완 과제
  - IV. 결론
- \* 참고문헌

### I. 발제의 기본 입장과 목적

이 원고는 지난 2월 23일 발제자가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검토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대 양성과정 개편 방안”<sup>1)</sup>을 재정리한 것이다. 정부의 학교폭력 관련 종합대책이 여러 사안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특히 교원양성대학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학회에서도 이점을 다시한번 거론하고자 한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교사들과 그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교원양성대학들에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초·중등학교와 교사들이 방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음에 유의하고자 한다.<sup>2)</sup>

1) 허종렬,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검토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대 양성과정 개편 방안”,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방법과 법과인권교육 활용 방안(학술발표회 자료집), 2012.2.23, pp. 19-54.

물론 우리는 지금 교원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 MB정부가 들어선 초기만 하더라도 교사들은 사교육시장인 학원가의 강사들에 비하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다고 매도되고 내몰린 바 있다. 그때는 정부가 학교에 대해서 대학입시를 포함한 각종 입시에서 학원을 능가하는 성적을 올려주고 이를 통하여 공교육이 사교육을 압도함으로써 사교육시장을 잠재워주기를 기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에 관심을 쏟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입시보다 인성교육을 논하거나 생활지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거의 학부모와 동료교사, 지자체나 정부당국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지만) 학교폭력의 문제가 불거지니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앞으로는 지식보다 인성교육,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교사들을 내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되니 교사들은 지금 설 자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한다. 차제에 바라기는 앞으로는 절대로 사교육시장과 비교하여 성적을 못 낸다고 교사들을 몰아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는 학교가 사교육시장을 주도하는 학원과 같을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공언해주기를 바란다. 정부도 앞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지식위주의 교육보다 인성 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정말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한편 교사들도 학교폭력 등 일련의 사회적 현안들에 대처하는 점에 있어서 무능하고 미온적이며,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방치하는 경우

- 2) 지난 해 12월 20일 대구 모 중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자살사건이 터진 것을 계기로 작년 11월 1일 이후 금년 2월 현재 시점까지 한국언론재단 신문 기사 사이트인 카인즈(Kinds)<sup>1)</sup>를 통해 범정부 및 범사회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광범위한 대책들을 언론 기사들을 모두 스크랩해보았다. 그 결과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 모두 20여개의 쟁점에 대해서 사설 100여 가지를 포함하여 3500여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들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동기 등 분석과 재교육 및 처벌 수위, 감시 대책, 가해학생 인성 및 적성 검사,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방안, 자살 실태, 베르테르 효과 차단,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학교폭력 해소대책으로서의 '학생자치법정'의 확대 보급, 불량게임의 규제, 교권확립, 생활지도의 강화, 피해학생 신고시스템의 합리적 개선, 심리상담 등의 교육적 처치방안 강구, 학교폭력 문제에 능동적인 체질을 길러주기 위한 양성고 연수 방안, 인성 및 가치관교육, 외국의 동향,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의 미흡 등이다.

까지 있다고 하는 사회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과연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알아도 여러 가지 학교 근무 여건상 그러한 사태를 해결하는 일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다가 결국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 교사들이 이런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교원양성과정에 학교폭력 대처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며, 대학 재학 중 교직적성과 인성 검사를 최소 2회 실시하며, 임용시험시 면접에서 이런 점을 강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직교사들에게도 각종 연수를 통해 이런 점을 주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며, 교원양성대학이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완전히 거듭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 의식에 입각해서 특히 교원양성 대학 실습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검토

정부가 지난 6일 밝힌 학교폭력 대책들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는 직접대책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하는 근본대책 등 두 가지 방안이다.<sup>3)</sup>

정부는 이 대책들에서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실천정책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로 한다.

3)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http://mest.korea.kr/gonews/branch.do?GONEWSSID>) 자료 참조.

## 1. 직접 대책

### 가. 교원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①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과제 1-1)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하고 별도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함.

#### ②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과제 1-2)

담임교사는 금년부터 매학기 1회 이상 모든 학생과 1:1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도록 하며, 담임의 이러한 역할이 가능하도록,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도<sup>4)</sup>를 도입함. 이 제도는 우선 '12년에는 중학교에 적용하고, '13년에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함. 학생수 기준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함.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별 생활지도 전담팀을 운영하고, 행정업무경감, 법률상담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함.<sup>5)</sup>

그 외에도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게임중독 등 포함)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함.<sup>6)</sup>

4) “현재 중학교 교사의 40% 정도는 비담임이며, 이들에게 부담임 역할을 부여해 학생을 보살피도록 하고, 담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담임은 알림사항 전달·급식·청소지도 등 학급운영, 학생상담·출석 및 지각 점검·학부모상담·복장지도 등 생활지도 업무를 맡는다. 부담임은 학적관리, 학급행사 운영, 학급관련 행정업무 등을 분담한다.” 위의 홈페이지 참조.

5) 교과부는 학생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되,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11년 883명에서 '12년 1,383명으로 500명 증원하며, '13년 2,383명으로 1,000명을 증원한다고 한다. 아울러 Wee클래스도 중·고교수를 '11년 2,278개교에서 '12년 3,800개교로, '13년에는 4,800개교로 확대한다고 한다.

6) 교과부는 '12.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은 학생이해와 지도에 활용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까지로 한다는 방침이다.

**③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과제 1-3)**

'12년도부터 교사자격증 수여시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하도록 함. 그 내용에는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사이버 폭력 대응 방법 등을 포함시킴.

신규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상황 문제해결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실시함.

각종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대폭 반영함.

**나.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①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 기능 강화(과제 2-1)
- ②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2-2)
- ③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과제 2-3)
- ④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과제 2-4)
- ⑤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과제 2-5)

**다.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 ①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과제 3-1)
- ②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과제 3-2)
- ③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3-3)

**라.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 ①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과제 4-1)

**② 교사-학부모간 소통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과제 4-2)**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 후에 개최하도록 함. 단위학교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간의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 제공하고, 가정방문 면담 또는 이메일 면담을 실시하도록 함.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그 학부모도 소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함.

- ③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과제 4-3)

## 2. 근본 대책

### 가.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 ①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과제 5-1)
- ②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과제 5-2)
- ③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과제 5-3)

#### ④ 학생-학부모-교사의 학생생활규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과제 5-4)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정한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추진함. 학교에서 제정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생생활규칙에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권한과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함.<sup>7)</sup>

【우수사례 : 부산 연제중, 벌칙선택제(PNC) 운영으로 학교폭력 감소】

- (내용) 벌칙 약속(Promise)-벌칙 예고(Notice)-벌칙 선택제(Choice) 3단계 과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생활규칙 준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함
- (성과) 무단결석일수 ('10)1,648일 → ('11)418일 / 학업중단학생수 ('10) 10명 → ('11)3명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10) 3건 → ('11)0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협의를 통한 규칙의 제정과 동의 및 이것의 준수를 통한 인성교육의 개선방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됨.

7) 이것은 발제자가 입버릇처럼 주장해온 전형적인 법교육의 방법론이자 인권교육의 방법론이다. 미국의 경우 어디에서나 이렇게 한다. 오늘 권혜정 선생님 등이 발표하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인권교육 활용방안이 이것과 관련된 미국의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 줄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년 상반기 중 생활지도부장협의회, 학부모단체,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여 학생생활규칙 모형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도록, 학교장, 생활지도부장 등 대상 연수 실시 후, 모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2학기부터 본격 적용하겠다고 한다.

【인성교육 실천 개요】			
구분	현행		개선방향
의견수렴	학생의 의견 청취	➔	학생, 학부모의 의견 청취
규칙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음	➔	입학단계 또는 매학년 초기 학생·학부모의 동의서 제출
규칙 운영 단위	학교 단위	➔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운영
규칙의 내용	규정이 많고 복잡	➔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
규칙의 성격	징계 등 학생 선도	➔	규칙 준수 체득을 위한 인성교육

- ⑤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과제 5-5)
- ⑥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과제 5-6)
- ⑦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과제 5-7)

#### 나.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 ①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제 6-1)
- ②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과제 6-2)

#### 다.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 ①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제 7-1)
- ②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과제 7-2)

### 3.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

#### 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교사양성-임용-연수 정책의 개관

교과부는 지난 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 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교과부 보도자료, 2012.2.15).<sup>8)</sup> 이



안은 신규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의 정부 종합대책에서 제기된 교사들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임용의 두 단계를 모두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후자를 중심으로 이 교사 신규채용제도가 학교폭력 관련 교사들의 대처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 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취지

교과부는 학생선발 및 양성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 강화하는 등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번 교사 신규 채용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적성 및 인성요소’를 강화 : 학생선발 및 교사양성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요소’ 강화

둘째, 교직과목 이수 성적 기준 상향 조정

셋째, 수험생의 수험부담 완화 :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항 출제와 학원 의존도 심화,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화 초래 등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시험단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수험생의 수험부담 완화

### 다.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 (1) 학생선발·양성 및 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 강화

그 동안 일부 정신적으로나 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하여 선발단계에서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대두되어 왔음.

이에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입학생 선발단계부터 재학·자격부여까지 단계적으로 ‘인·적성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

우선, 교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양성기관의 학생 선발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를 추진하고, 전형과정에서 ‘인·적성 요소’를 중점적으로 활용함.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 운영 강화’ 반영 및 대교협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교·사대 특성에 맞는 입학사

---

8) 이 안은 2011년도에 이미 발표한“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11.3.31)”에서 추가적인 논의과제로 제시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정관 전형 확대를 유도함.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에는 2회 이상의 ‘인·적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에 반영할 계획임.

교과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함.<sup>9)</sup>

### (2)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대학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함.<sup>10)</sup>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학생 상담 및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사례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등 교실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가능해 질 것임.

지나친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B학점 이상의 비율을 최대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세부 비율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함.

이번에 바뀐 교직과목 이수기준 등은 ‘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함.

### (3) 초·중등 임용시험 체제 개선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체제를 간소화하기로 함.

(초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고,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함.

1차 시험에서는 ‘교직’과 ‘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답형으로 평가하고, 2차 시험에서는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이 실시됨.<sup>11)</sup>

9) 이 작업을 위해서 초·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이 필요하다.

10) 이를 위해서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이 필요하다.

11)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는 유치원, 초등특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17조를 개정하여 한다.

(중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여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함.

객관식 과목 폐지로 인해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답형으로 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함.

교육학 논술이 신설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기존의 3단계 전형을 유지하고, 바뀐 2단계 전형은 2013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함.

이러한 시험체제가 적용되면, 기존 3~4개월에 걸친 시험기간이 약 1.5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4학년 2학기 학사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라 함.

아울러 교사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임용 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을 부과함.

이와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사로서 한국사 소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13년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함.<sup>12)</sup>

#### 4. 정부 종합대책 및 신규 교사채용제도 평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에 발표된 단기개선 과제와 더불어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수험생의 부담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는 특히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위의 종합대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와 능력 역량, 체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과목 신설 이상의 교육과정 자체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

12) 이를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 개정이 필요하다.

### 가. 가능성

교과부는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 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이 됨으로써, 학생 상담 및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사례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등 교실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

### 나. 한계

- (1) 학교폭력 등에 직접 관련을 맺는 부분이 미흡하며, 구체성이 떨어진다.
- (2) 위 제도의 개편으로 보다 인성이 좋은 학생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바꿔보려는 치열한 접근을 하는 체질이 강화된 교사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접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 (3) 지금도 대부분 교대 입학생들은 성실하고 모범적이며 충분히 인성이 좋은 학생들이다. 오히려 너무 모범적이고 착해서 문제라는 지적이 많으며, 성적이 떨어지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4) 그러므로 위의 개선 방안이 과연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데 지금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 (5)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문제 학생 대처 능력 강화 및 체질 강화 방안이다. 체질을 강화하려면 교사대 학생들의 건전한 교직원 확립, 재학중 다양한 문제학생 등을 접해보는 기회 제공, 현실적인 상담 소양 및 능력 제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대처능력 함양 등이 필요하다.

발제자는 이러한 보완을 위하여 교사론 강좌의 구체화 및 필수화(교사 인성교육 강화), 상담 강좌의 현장 중심 임상 중심, 현장 교사와의 협동 중심으로의 개편 등과 이것을 위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교생실습 체제 전면 개편, 학교폭력과 학교평가를 연계하는 평가시스템 개편 등의 법적·행정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 Ⅲ. 정부 종합대책 및 교사 신규채용제도의 보완 과제

#### 1. 교원양성기관의 구체적 교육과정 개편 필요

##### 가. 임상 및 현장 중심의 생활지도 및 상담교육 강좌의 전면 개선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 사례중심 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임상 상담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 즉, 교수 등 학계 중심의 순수 학문적 접근에 현장 교사들의 상담 사례 소개와 대처방안 등 협동 강좌 개설 필요하다.

교육 심리학 뿐만 아니라 일반 심리학 강좌 강화, 의료적 처치 방법 강좌 소개도 필요하다.

##### 나. 교사들의 법적 소양 강화를 위한 강좌 필요

학생 인권 및 교권을 포함한 ‘교직생활과 교육법’을 필수과목으로 해서 교사들의 법적소양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교대의 경우 단지 자유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법적 소양에 흥미를 느끼는 소수 외에는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 다. 현재 교대와 사대의 법교육 강좌 확충

현재 교대에서의 법교육 교사교육 강좌 개설 실태를 표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교대에서의 초등학교 법교육 교사교육 현황 비교】

한 국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관련 과목 개설 대학 : 1개 대학(서울교대)</li> <li>· 간접 관련 과목 개설 대학 : 9개 대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법학 또는 법률 여행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음.</li> <li>· 법 관련 강좌가 전무한 대학 : 2개 교육대학교(제주, 진주) 및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초등교육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교사 양성대학에서 법교육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li> </ul>

이 표를 보면 교대 가운데 직접 법 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곳은 현재 서울교대 밖에 없다. 본 대학도 단지 사회과 심화과정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택교과로 이것을 개설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이것을 전담할 전공 예비교사를 많이 양성해내도록 다른 대학들도 강좌 개설을 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심화과정 학생들은 이것을 필수로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심화과정 학생들은 이것을 선택교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범대도 법교육 과목 실태는 교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교대와 같은 처방이 필요하다.

#### 라. 교사론 강좌의 적용과 강화

교사들의 직업관을 바꿔놓을 교육과정 이수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단순한 직업관에 관한 토론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 2. 교생실습제도의 획기적 개편

현행 사대와 교대의 교육실습제도는 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문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는 많이 미흡하다. 이 점은 특히 사대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사대의 교육실습 개요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음에 교대의 실습제도를 논할 것이다.

#### 가. 현행 사대의 교생 실습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여기에서는 사대의 교육실습의 현황을 몇 개 대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본다.

##### (1) S대 사대 교육실습 개요

교육실습으로 2학점 이상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4학년 2학기 4주간 근무 교육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습의 이수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S대 사범대학 교육실습 이수규정'을 보면 된다. 교과목으로서의 교육실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13)</sup>

---

13) S대 사대 홈페이지([http://edu.snu.ac.kr/academic/edu\\_adm04/](http://edu.snu.ac.kr/academic/edu_adm04/)) 참조.

- ① 학점 2학점, 영역 교직필수
- ② 수강자격 : 학부는 4학년 1학기(7학기 이상) 등록자이며 동시에 9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사범대학 교육실습 이수규정 제 3조 2항). 대학원은 3학기 이상 등록자(단, 조기졸업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③ 성적부여 - 성적평가방식 : A ~ F
- ④ 재이수 여부 : 재이수 가능
- ⑤ 기타유의사항 : 사범대생의 교육실습은 부설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당 과잉인원이 실습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학생 본인이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원하는 경우는 학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승인 한다(실시시기 : 2012년 교육실습부터 시행함). 교직과정 학생이 개별적으로 교육실습학교를 선정해 오는 경우 교원양성지원센터장이 검토 후 인정하기로 한다. (실시시기 : 2012년 교육실습부터 시행함). 부속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의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실습실시 전년도 10월말까지 교육실습허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⑥ 부설 중고등학교의 경우 : 실습기간동안 사대생들에게 수업을 하도록 한다. 이 학교는 국립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로서의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매년 S사대의 교육실습생을 수용하고 있다.<sup>14)</sup>

## (2) H대 사대 교육실습제도

- ① **교육실습의 목적** : H대도 큰 틀에서 S대와 다르지 않다.<sup>15)</sup> 본교의 교육실습 역시 교육현장에서 교육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② **교육실습의 과정 및 내용** : 본교의 교육실습 과정은 참관단계, 참가단계, 실습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참관단계란 교직에 대한 각종 업무를 실제로 담당해보기에 앞서서 현직 교사의 업무 수행과정을

14) 사범대학의 교육실습 현황 분석 연구의 예로는 예컨대, 김동위, 사범대학에서의 교육실습개선을 위한 연구 :상명여자사범대학 교육실습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논문집 10(82.3) pp.245-288 참조.

15) H대 사대 홈페이지(<http://www.hanyang.ac.kr/controller/homeView.jsp?file>) 참조.

관찰하는 단계를 말하며, 참가단계는 현직 교사와 함께 각종 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단계를 지칭한다. 실습단계는 지도교사의 지도아래 교육실습생이 스스로 업무를 담당해 보는 단계이며, 끝으로 평가단계란 교육실습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단계를 지칭한다.

④ **교육실습 중 이수해야 할 실습의 주요내용** : 학습지도 실습, 학급경영 실습, 학생지도 실습, 특별활동지도 실습, 수업참관

⑤ **교육실습 기간 및 일정**

- 교육실습 기간 : 2006년 4월 3일~4월 29일(4주간)
- 교육실습 대상자 : 총310명(사대 184명 / 비사대 126명)
- 교육실습 대상학교와 대상학급 대상과목 : 총 108개교에 나간다.
- 협력학교 순회방문지도 : 2006년 4월 둘째주부터 2회 이상 순회방문지도
- 교육실습 관련 일정표(안) :

### (3) 사범대 교육실습의 문제점

사범대 학생들의 교육실습은 일반 공사립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학교에서는 교생들의 교육실습이 중등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다.<sup>16)</sup>

사대는 특히 교육실습 측면에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항상 사대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내용학이나 교과방법론이나를 가지고 다 두고 있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싶은 교사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내용학도 중요하지만 방법론을 익히지 않거나 소홀히 다룬다면 이것은 교원양성대학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경험과학이다. 경험을 충분히 쌓도록 하지 않는다면

16) 사범대학 출신의 실습교사들은 대개 실습대상학교에 많게는 수십 명에서 적게는 10명 선이지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비사범계 학생들 중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연고가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에 1명씩 배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효과적인 실습의 관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습을 전적으로 지도교사 1인에게 맡기게 되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습교사들은 실습을 나가기 전에 한 곳에 모여 일률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사범대생들에게는 이것이 체계적인 교육실습 지도를 받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



교육학이라고 할 수 없다. 교사가 되는 4년의 과정에서 4주간의 단기실습으로 교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범대생들은 실습기간이 짧기 때문에 문제학생 혹은 부적응학생을 개별 상담할 기회가 별로 없으며, 간혹 집단 상담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물론 실습 교사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적응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시도하는 경우는 있다.

교육실습이 이 정도이니 사대생들은 대개 처음부터 교사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등으로 문제될만한 학생들을 만나보거나 지도해볼만한 기회는 거의 갖지 못한 채 발령을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문제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역량과 능력, 체질을 갖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등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소극적이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양성과정 자체가 부실한 데에 큰 이유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사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실습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 나. 교대의 교육실습의 내용과 문제점

### (1) 전국교대의 교육실습제도 개관

교대의 경우 사대에 비하여 실습제도가 정교하게 정착되어 있다.

우선 기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교대는 사대가 4년중 단지 2학점에 1달의 기간만 실습을 하는데 비하여, 4학점에 9주 내지 11주 정도의 실습을 한다. 나아가 그 기간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대개 5차례 정도 나누어서 실습을 나간다. 예컨대 S 교대의 사례를 들면 2학년 1학기에 1주, 2학년 2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4번을 2주씩 나누어서 나간다. 이것은 다시 말해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상시 실습을 받는 시스템이다. 교대생들은 이 기간동안 대학과 현장을 오가면서 자신이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듭 되짚어보고 적응해가는 과정을 밟으며, 4학년이 되면 이미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수업 방법과 자세와 태도를 터득하게 된다. 사대에 비하여 정교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따라서 교대와 사대의 교육실습과정을 일괄해서 비판하는 것은 문제 있다.

교대는 5번의 기회를 설정한 실습의 목표에 따라서 예컨대 관찰실습, 참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로 구분하여 나간다. 여기에서 S교대의 교육실습제도를 상세히 검토해본다.<sup>17)</sup>

17) S교대 홈페이지([http://www.snue.ac.kr/campuslife/menu04\\_s2\\_03.jsp](http://www.snue.ac.kr/campuslife/menu04_s2_03.jsp)) 참조.

## (2) S 교대의 구체적인 교육실습제도

- ① **교육실습생 배정 원칙** : 실습학교에서는 기간에 관찰실습, 참가실습, 수업실습 I, 수업실습 II, 실무실습의 5단계 교육실습기간에 저, 중, 고학년의 교육실습을 모두 경험 할 수 있도록 교생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학급에는 학생배정을 할 수 없다  
예시) 저학년(1,2학년)에 배정 받았을 경우는 중 또는 고학년에 배정한다.  
중학년(3,4학년)에 배정 받았을 경우는 저 또는 고학년에 배정한다.  
고학년(5,6학년)에 배정 받았을 경우는 저 또는 중학년에 배정한다.
- ② **교육실습의 목적** : 교육실습은 교직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증진하고,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적용, 검정하여 심화시키고, 교직의 기술을 함양 할 뿐만 아니라, 교직자로서의 자기평가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자로서의 신념과 정신을 확립시켜 교사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③ **교육실습의 목표** : 교육조건의 이해증진, 교육이론의 실제 적응력 배양, 학습지도 능력의 습득,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며 나아가 교직, 학급, 학교 사무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를 처리 능력습득과 투철한 교육자적 정신을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 (3) 교대 실습제도의 문제점

교육실습의 목표는 실습의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 관련 문제 학생을 만나보거나 가르쳐볼 기회를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 다. 부적응 혹은 비행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실습 기회 부여의 필요성

거듭 말하지만 사대는 아예 제대로 된 실습제도라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4주간의 실습을 가지고 실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육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범학교, 모범 학급, 모범 교사, 모범학생들을 잠시 만나보는 것 외에 비행청소년을 접해볼 기회는 전혀 없는 편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

교대는 상대적으로 사대에 비하여 훨씬 사정이 낫은 편이다. 그럼에도 그 실습제도 내에 실습기간동안 문제 학생을 만나보게 하거나 가르쳐보게 하겠다는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발제자는 이런 문제점을 접하면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 학교 실습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 사립학교, 소년원 등으로 실습 대상 학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여건이 되지 않으면 만들어서라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문제 학생에 적극적인 열정과 애정을 가진 체질적으로 적응 가능한 교사를 양성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대와 사대 공히 실습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문제 학생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으로는 실습기간을 한 학기 정도로 우선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교대는 기존의 9주 외에 7주 정도를 더 할애하여야 한다. 그 기간 중에 보다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학생들을 두루 경험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사대는 교대의 실습제도를 차용하여야 한다. 4년간 단지 1회 단기 집중 이수를 하도록 하는 제도보다는 적어도 2년 반동안 실습 기간을 분산시켜 장기 이수하는 제도로 개편하여야 한다. 재학기간 내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교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학교 외에 특수학교, 대안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도 가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IV. 결론

학교에서 교사는 부모의 교육권을 대위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 교육은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것을 깨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의 가르침을 소홀히 생각하게끔 하고 교사를 상대로 다투게 하는 것인한 교육의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 학생 인권조례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이다.

학교폭력의 문제 역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일에 교사가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교와 교사에게 일정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상응한 책임을 물겠다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발제자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적극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합당하게 처리할만한 능력과 역량, 체질을 갖추었는가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즉, 권한과 책임은 강화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부족하다면 곤란하다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이 점을 감안하여 향후 각종 교원 양성 과정과 연수 과정에서 그 대처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보면 여전히 미흡하며, 다른 대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발제자는 교사들은 사실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 나름대로 선량하고 최선을 다한다. 문제는 교사를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교대와 사대를 나온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제대로 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실습제도를 과감하게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번의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초점이 교사들에게 좀 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대신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시도가 의미를 갖는다. 학교의 모든 문제는 교사들이 나설 때 해결된다. 그 교사들이 나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사 양성을 위해 정부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보도자료. 2012. 2. 6.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뉴스, 복수담임교사제 도입...어떻게 운영되나. 2012. 2. 8.
- 교육과학기술부.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2.2.15
- 문화일보, 2012.2.6, 세계일보, 2012.2.7, 동아일보, 2012.2.7, 경향신문, 2012.2.7, 한국일보, 2012.2.7, 한겨레, 2012.2.7, 서울신문, 2012.2.7.의 사설.
- 한국일보, 2011. 5 .9 에서의 [진화하는 학교폭력] (1) “초등학생 더 이상 아이 아니에요.”

[http://cafe.daum.net/ edu hopenet](http://cafe.daum.net/edu_hopenet)

[http://cafe. daum.net/silladokdo](http://cafe.daum.net/silladokdo)

<http://www.kinds.or.kr/>

<http://mest.korea.kr/gonews/>

<http://www.elvin.co.kr>

<http://edu.snu.ac.kr/academic/>

<http://www.hanyang.ac.kr/controller>

<http://www.snue.ac.kr/campuslife>

2012 춘계(통산 12차) 정기 학술 발표회 자료집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당사자의 역할과  
소수자 학교폭력 문제의 법·인권 교육적 접근**

---

2012년 5월 26일 인쇄

2012년 5월 26일 발행

발행처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발행자 / 허 중 렬

편집인 / 이 대 성, 김 상 돈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61(서초동 1650번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

Tel: 02-3475-2431

E-mail: lawedu2008@paran.com

Homepage: <http://www.khlea.org>

인쇄처 / (주) 가람문화사

Tel: 02-873-2362

---